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양 보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리적 표시제의 실시와
역사지리적 접근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유 기 진

지리적 표시제의 실시와
역사지리적 접근

양 보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유 기 진

인 준 서

유기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지리적 표시제(地理的 標示制)는 우수한 농·축·임·수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생산자를 보호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며,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2002년 보성녹차가 농축산물 지리적 표시 제 1호로 등록된 뒤 지속적으로 그 수가 늘어, 2012년 5월 현재 농·축·임·수산물 133개 품목이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다. 선행 연구 분야는 주로 법, 특허, 무역 분야로서, 제도와 절차 또는 국제적 입장과 같은 대외적인 성격의 것이 많이 이루어진 반면, 지리학 관련 연구가 이뤄진 바가 적었다.

본 논문은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역사지리적 접근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차로 제도의 실시현황의 지역별 고찰을 위해 시·군별로 지역별 분석과 지도화를 시도하였으며, 이어 품목별 분석을 하였다. 지리적 표시제가 행정적, 경제적 성격으로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성을 규명하는 새로운 시각으로서 역사지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조선시대의 지리지들 통해 지역의 특산물을 파악해 보고자, 조선시대의 주요한 지리지인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15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6세기), 『여지도서(輿地圖書)』(18세기), 『대동지지(大東地志)』(19세기)의 「토산(土產)」과 「물산(物產)」 항목을 살펴서 현재의 지리적 표시 품목과 얼마나 일치, 불일치하는가 여부를 분석하였다. 일치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역사기록에 있으나 지리적 표시에 등록되지 않은 품목과, 역사기록에는 없지만 현재는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는 품목으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행정구역의 통합도 고려하여 현재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과 역사지역이 달라진 경우 고을별로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역사성이 있다고 보이는 품목은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 있는지, 통합된 고을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 품목인지 여부를 살펴 지리적 표시제가 가지는 역사성을 도출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강릉두릅, 양양송이, 진부당귀, 홍천잣, 울진송이, 가평잣, 강화약쑥, 충주밤, 영동곶감, 보은대추, 한산모시, 나주배, 영암대봉감, 장흥김, 장흥매생이, 장흥표고버섯, 보성녹차, 경산대추, 기장미역, 상주곶감, 함양곶감, 하동녹차, 악양대봉감의 23개 품목은 역사기록과 현재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품목이 일치해 역사적·지리적 전통성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리적 표시제의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것은, 지리적 표시제의 법적 기초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상표법에 근거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관리기관이 농산물품질관리원·산림청·수산물품질검사원과 같이 통일되지 못한 채 나뉘어져 있어 지리적 표시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 등이다.

본 논문을 통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지리적 표시 품목의 역사성을 홍보해온 품목들이 객관화될 수 있으며, 품목들의 역사성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을 살펴 연속성의 축을 확장할 수 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조선시대로 한정하고, 읍지연구를 하지 못한 것이 본 논문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시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역사문헌을 통한 연구이자 역사지리적 관점에 의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 이후에 관련 연구필요성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차 례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2
3. 선행연구	3
II. 지리적 표시제의 실시	6
1. 지리적 표시제의 개념	6
1) 국내에서의 지리적 표시제의 도입과 대상	6
(1) 지리적 표시제의 개념과 목적	6
(2) 지리적 표시제의 기능 및 남용 위험	8
(3) 지리적 표시제의 도입 배경	10
(4)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 절차	11
2) 국외에서의 개념	18
(1) EU의 지리적 표시 등록 제도	18
(2) 프랑스의 지리적 표시 제도	18
(3) 벨기에의 지리적 표시 사례	19
2. 지리적 표시제의 실시	21
1) 법적 근거	21
2) 실시 경과와 현황	22
3. 유사 제도와의 관련성	28

Ⅲ. 지리적 표시제의 유형 및 분석	29
1. 지역별 분석	29
2. 품목별 분석	37
3. 역사성 · 전통성 · 지역성 비교	40
1) 강원도	45
2) 경기도	51
3) 충청도	55
4) 전라도	63
5) 경상도	75
Ⅳ. 지리적 표시제의 활성화 방안	92
1. 효과와 문제점	92
2. 활성화 방안	96
1) 등록법인의 육성지원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인식제고 ...	96
2) 역사성·전통성 고려	97
3) 장소마케팅 및 문화역사지리적 상품개발	100
Ⅴ. 결 론	101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차례

표 1. 지리적 표시제의 정의 비교	7
표 2.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대상 품목	12
표 3. 지리적 표시제의 심사기준	15
표 4. 보성녹차 등록내용	17
표 5. 지리적 표시제의 법적 근거	21
표 6. 연도별 부문별 지리적 표시제 등록 현황(2012.04 기준)	23
표 7. 연도별 지역별 부문별 지리적 표시제 등록 현황(2012.04 기준)	33
표 8. 농축산물 지리적 표시제의 도별 분포표(2012.04 기준)	36
표 9.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의 도별 분포표(2012.04 기준)	37
표 10.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의 도별 분포표(2012.04 기준)	38
표 11. 지리적 표시제 등록 품목별 현황(2012.04 기준)	39
표 12. 강원도 지리적 표시제의 역사성 비교	52
표 13. 경기도 지리적 표시제의 역사성 비교	54
표 14. 충청도 지리적 표시제의 역사성 비교	60
표 15. 전라도 지리적 표시제의 역사성 비교	70
표 16. 경상도 지리적 표시제의 역사성 비교	82
표 17. 역사성을 보유한 지리적 표시의 유형	98

그림 차례

그림 1.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절차	13
그림 2. 농축산물 지리적 표시제 현황(2012.04 기준)	25
그림 3.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 현황(2012.04 기준)	27
그림 4.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현황(2012.04 기준)	29
그림 5. 지역별 지리적 표시 등록건수(2012.04 기준)	32
그림 6. 역사성을 보유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품목	99

부록 차례

부록 1. 농축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현황(2012.04 기준)	109
부록 2.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현황(2012.04 기준)	113
부록 3.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현황(2012.04 기준)	115

I. 서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들어, 개혁개방의 압력으로부터 국산 농·축·임·수산물을 지키고자 도입한 것이 바로 지리적 표시제(地理的 標示制,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이다. 지리적 표시제란 ‘상품의 원산지로부터 연유되는 품질이나 명성을 갖게 되는 특별한 지리적인 출처를 가지는 상품에 사용하는 표시제도’로서,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그러므로 지리적 표시제는 당연히 지리학의 연구과제 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주된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법, 특히, 무역학 분야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연구는 제도와 기관, 절차와 같은 대외적인 것이 주를 이루었고, 지역패턴 분석이나 자연환경·인문환경에 따른 품목구성 등의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한 지 10여년의 시간이 흘러 현재 총 133개의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국내 지리적 표시의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리적 표시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도의 성격과 규모, 현황,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으로서 역사성에 근거한 지리적 표시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133개 지리적 표시 가운데, 개별적으로 역사성을 주장하는 지리적 표시와 그렇지 않은 지리적 표시가 섞여 있다. 남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축·임·수산물로 등록되어 있는 133개 지리적 표시를 분석하여 지리적 표시가 가지는 역사성·전통성·지역성을 역사지리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리적 표시가 지닌 많은 가

치 가운데 역사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 기존의 역사성을 주장하던 사례들의 신뢰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새로운 지리적 표시 가능품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지리적 표시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2. 연구방법

지리적 표시제의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문헌연구와 지역사례 분석을 사용한다. 더불어 공간적인 축에 시간적인 축을 더하여, 역사지리학적인 입장에서 역사지리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할 것이다. 역사지리학은 과거의 지리를 연구하여 현재의 지리를 새롭게 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래의 지리를 고민하는 학문이다. 일반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의 국토 위에는 현재의 지리뿐만 아니라 과거의 지리가 퇴적되어 있다. 과거의 지리 가운데 현재에도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하여 그 시점으로 돌아가 당시의 지리를 재현(representation)하여 오늘날 지리적 표시제가 가진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¹⁾.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지 중 가장 중요한 전국 관찬지리지와 사찬지리지를 활용해 시계열적 분석을 하였다. 15세기의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16세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8세기의 『여지도서(輿地圖書)』, 19세기의 『대동지지(大東地志)』의 지리지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지리지의 토산(土產)품목들을 현재의 지리적 표시품목과 비교하여 지리적 표시제가 가지는 역사성·전통성·지역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 기꾸지 도시오, 윤정숙 역, 1995, 역사지리학방법론, 이회, pp. 282~291.

3. 선행연구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법, 특히, 무역학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다.

김병일²⁾은 초기 지리적 표시제 연구의 방향을 잡아주었다.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와 보호방안, 그 법제화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였고 독일 사례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구양준³⁾은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특허권이나 상표권에 지리적 표시를 비교하여,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면서도 독특한 성격을 정리하였다. 지리적 표시가 본질적으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 광고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생산자(권리자) 집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소비자들의 이익도 보호해 줄 수 있으므로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협상과정에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EU는 다국적 기업에 대하여 자국의 지리적 표시 상품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이 일반명칭화된 기존의 EU상표를 폐지하고 보호해 달라는 내용이며 특히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하여 적극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반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에서는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국제적 흐름과 주요쟁점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지리적 표시 상품의 개발과 생산자들의 조직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리고 있다.

2) 김병일, 2007, “독일에서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 창작과 권리 제49호(겨울).

김병일, 2003, “지리적 표시 보호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13호. pp. 201~244

김병일, 2001(a),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 창작과 권리 제22호(봄).

김병일, 2001(b), “지리적 표시의 효율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 연구용역보고서

<http://www.kipo.go.kr/kipo/user.tdf>.

3) 구양준, 2009,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무역학 박사학위논문.

금령⁴⁾은 중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내용을 법학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각 다자간 협약들이 중국에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이 지리적 표시 보호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의 혼란, 생산자와 소비자의 법률 관념 부재, 부서 간의 이익 충돌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은 오랜 역사와 넓은 영토, 인적 자원으로 많은 지리적 표시 제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보호 방식을 택하는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 보호법을 세워 지리적 표시 보호를 법제화하는 것이 중국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고부가가치 전략의 구축에 있어 결정적인 사항이다. 중국의 지리적 표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아 시사점이 있다.

전현진⁵⁾은 지속가능한 소득기반구축의 방법론으로서 지리적 표시제의 활성화를 연구하였다. 설문을 통해 관련 주체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상적인 모델과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들었다.

사례연구에 중심을 맞춘 연구는 박은철⁶⁾, 권혁례⁷⁾등이 있다. 박은철은 지리적 표시 가운데 한국 인삼이 타국삼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요 수출국가를 유형화하여 국가별 전략을 제시하였다. 권혁례는 고창 복분자주가 가지는 관광의 가치를 설문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4) 금령, 2009, “중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5) 전현진, 2009,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를 통한 농산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소득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경영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6) 박은철, 2001, “인삼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7) 권혁례, 2005, “복분자주의 관광상품적 가치에 관한 연구 : 고창 지역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관광경영대학원 호텔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지리학적 배경을 가진 연구로는 서정욱⁸⁾의 연구가 있다. 서정욱은 국내 지리적 표시 제 1호인 보성녹차를 사례로, 지리적 표시제가 지역 문화산업 진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서정욱의 연구는 지리학계에서 쓰여진 지리적 표시제 관련 연구 가운데 가장 최초이자 최근까지 유일한 연구로서, 직접적인 사례를 서술하며 지역활성화를 연계한 의미가 있다.

8) 서정욱, 2006, “지리적 표시제 도입이 지역 문화산업 진흥에 미치는 영향 -보성녹차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2). pp.229~244.

II. 지리적 표시제의 실시

1. 지리적 표시제의 개념

1) 국내에서의 지리적 표시제의 도입과 대상

(1) 지리적 표시제의 개념과 목적

지리적 표시제(地理的 標示制,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⁹⁾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로는 상품의 원산지·판매지 기타 지리적인 연관이 있는 모든 표시의 상위개념이고, 협의로는 WTO/TRIPs¹⁰⁾ 협정 제22의1조¹¹⁾에서 규정하는 지리적 표시 개념, 즉 상품의 원산지로부터 연유되는 품질이나 명성을 갖게 되는 특별한 지리적인 출처를 가지는 상품에 사용하는 표시 제도를 의미한다¹²⁾.

본 연구에서 다룰 지리적 표시제는 협의의 개념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리적 표시제란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역·특정장소(때로는 국가도 포함)의 명칭을 뜻한다. 그러므로 지리적 표시¹³⁾는 반드시 지리적 명칭(특정 지역·지방·산·하천 등의

9) 국내 농림수산물부에서는 지리적 표시(PGI :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를 사용하고 있다.

10)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11) 지리적표시라는 개념은 이 협정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며 TRIPs 협정 제3절 제22조~제24조에 걸쳐, 지리적 표시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의규정인 제22의1조에서는 지리적표시를 “이 협정의 목적상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성·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허순희(2005)에서 재인용.

12) 허순희, 2005, “지적재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p. 89.

13) 제도를 지칭할 때는 지리적 표시제로 칭하고, 개별 사례, 즉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개별 품목을 지칭할 때는 지리적 표시로 약칭한다.

명칭)이어야 하며, 지리적 명칭과 관련이 없는 브랜드는 상표이기는 하지만 지리적 표시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표 1. 지리적 표시제의 정의 비교

<p>TRIPs 협정 제22조 제1항</p>	<p>이 협정의 목적상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다.</p>
<p>리스본협정 제2조 제1항</p>	<p>“원산지 명칭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기원한 상품과 품질 그리고 자연적이며 인적인 요소(natural and human factor)를 포함한 배타적 또는 본질적으로 지리적 환경에 기인하게 된 특성 등을 나타내는 국가, 지역 또는 산지(locality)등과 같은 지리적 명칭을 의미한다.”</p>
<p>‘04년 개정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의2호</p>	<p>“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품질·명칭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생략)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PGI에 수렴)</p>
<p>농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7호</p>	<p>“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PDO에 수렴)</p>
<p>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2호</p>	<p>“지리적 표시”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명칭,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것인 경우 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p>

출처 : 김원오 외, 2011, 국내 지리적 표시제도의 통합화 방안 연구, 사단법인 대한상표협회. p. 35. 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법을 추가하여 재구성

지리적 표시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야 하고, 해당 품목이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상품의 생산, 가공과정이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 지역성을 반영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품목의 특성이 대상지역의 지리적 요인(자연환경·인문환경적)에서 기인하며, 해당 상품의 생산자들이 하나의 법인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품목의 ‘유명성, 역사성, 지역성, 지리적 특성, 조직화된 생산자’의 5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지리적 표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충분한 제품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면서 동시에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¹⁴⁾.

(2) 지리적 표시제의 기능 및 남용 위험

지리적 표시제의 기능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출처표시기능과 품질표시기능이다. 특정 지역 특정 상품에 지리적 표시를 함으로써 상품의 우수성과 특이성을 수요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으며,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성능과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소비자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기 때문이다. 특산물과 같은 지리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 상품들은 소비자들이 그 출처와 품질을 동일시하게 된다. 지리적 표시도 상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 대하여 재인식가치를 가지며 특정한 품질의 기대를 전달하므로 광고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상품에 대하여 오랜 관용적 사용으로 지리적 표시가 그 중요성을 상실하는 보통명칭화, 그리고 지

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리적 표시의 판매력을 약화시키거나 지리적표시가 가지는 좋은 의도를 손상시키는 희석화로 본래의 의미·목적·기능을 해할 수 있다. 출처기만은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되거나 ‘~형’, ‘~타입’ 같은 표현의 수식어와 사용되는 경우, 실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지만 일반소비자에게 그 제품의 종류·구성·질에 관하여 유명한 지역의 제품과의 연상을 주어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 전반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누적되어 소비자가 일정한 지역이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모든 제품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정도로 지리적인 명칭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보통명사화 된다면 그것은 지리적 표시로 더 이상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다¹⁵⁾. 희석화로부터의 보호는 지리적 표시 자체가 일반인에게 표시로서의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보호를 통한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¹⁶⁾

이러한 지리적 표시제의 도입을 통해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들은 생산자측면, 소비자측면, 정부측면, 지역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농산물에 대해 지리적 표시를 실시함으로써 생산자 단체가 품질향상에 노력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촉진할 수 있으며, 생산자 단체 간의 상호협조체제가 원만히 구축될 경우 생산품목의 전문화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리적 표시제에 의해 보호됨으로서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정부입장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다. 또한 지역측면에서는 시장차별화를 통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효과가 기대된다.

15) 유럽연합은 가치 있는 용어를 독점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 유럽연합의 규정은 이미 회원국 내에서 보통 명칭화한 용어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하려고 한다(허순희, 2005, 앞의 논문, p. 90.에서 재인용).

16) 허순희, 2005, 앞의 논문, p. 90.

(3) 지리적 표시제의 도입 배경

지리적 표시제는 UR 협상과정에서 EU와 그 회원국들이 중심이 되어 TRIPs협정에 포함시켰으며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원산지표시와 원산지 명칭의 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서, 이 가운데 원산지표시(출처표시)의 개념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정 국가, 특정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기호 또는 도안을 나타낸다(마드리드 협정¹⁷⁾ 제1조 제1항¹⁸⁾. 그러므로 이러한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사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농수산물품질관리법 : '99.07.01)¹⁹⁾

지리적 표시제는 지적재산권의 한 분야로서,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아 온 특허권·상표권에 못지않게 국가 간에 뜨거운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가 이처럼 무역협상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지리적 표시의 권리를 어느 국가의 생산자 집단이 보유하느냐, 지리적 표시 보호대상이 되는 상품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실로 엄청난 규모를 가지기 때문이다.

17) 여기서의 상품의 허위 또는 오인 원산지표시 예방을 위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for the Repression of False and Deceptive of Indications of Source on Goods)은 파리협약의 특별협정으로서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과는 다른 조약이다. 오용석(2003)에서 재인용.

18) 오용석, 2003, “상표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 TRIPs 협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법 전공 석사학위논문, p. 5.

1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지리적 표시제가 수행하는 기능중심으로 고찰해보면,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은 물론 품질보증 기능과 광고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권리집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잘못된 정보로부터 보호받음과 동시에 구매의사결정까지의 시간절약효과를 누릴 수 있다²⁰⁾.

(4)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 절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시하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대상은 크게 원료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으로 나눌 수 있다. 원료 농산물에는 곡류, 두류, 서류, 유지류, 채소류, 약재류, 과일류, 버섯류, 견과류, 인삼류, 산채류, 화훼류, 식육류, 우유류, 알류, 임산물류, 기타가 포함된다. 농산물 가공에는 과자류, 두부류, 유지류, 다류, 음청류, 면류, 주류, 장류, 인삼제품류, 김치류, 축산제품류, 기타식품류, 임산물류, 기타가공품이 포함된다. 자세한 품목은 <표 2>와 같다.

20) 구양준, 2009,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무역학 박사학위논문, p. 177.

표 2. 지리적 표시제 등록대상 품목

구분	유형	대상 품목
원료 농산물	곡류	기장, 메밀, 밀, 보리, 쌀(현미 포함), 수수, 옥수수, 울무, 조 등
	두류	강낭콩, 검정콩, 녹두, 대두, 땅콩, 동부, 완두, 팥 등
	서류	감자, 고구마 등
	유지류	들깨, 참깨 등
	채소류	가지, 고들빼기, 고추, 깻잎, 당근, 더덕, 도라지, 두릅, 딸기, 마늘, 무, 배추, 생강, 수박, 순무, 양파, 연근, 파, 참외, 토란, 토마토, 호박 등
	약재류	감초, 결명자, 구기자, 당귀, 복분자, 산수유, 오가피, 오미자, 둥굴레, 익모초, 작약, 황기, 홍화씨 등
	과실류	감, 감귤, 대두, 매실, 모과, 배, 복숭아, 사과, 살구, 앵두, 유자, 자두, 포도 등
	버섯류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짜리버섯, 영지버섯, 표고버섯 등
	견과류	도토리, 밤, 은행, 잣, 호두 등
	인삼류	수삼 등
	산채류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등
	화훼류	동양란 등
	식육류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염소고기, 오리고기 등
	우유류	우유 등
	알류	계란, 오리알 등
	임산물류	고로쇠수액, 자작나무수액, 죽순, 칩 등
농산물 가공	기타	꿀, 녹용, 건조누에 등
	과자류	빵, 떡, 한과, 엿, 스낵과자 등
	두부류	두부, 묵 등
	유지류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등
	다류	침출차, 추출차, 분말차 등
	음청류	곡류 음료, 두류 음료, 채소 음료, 과실 음료 등
	면류	면, 국수 등
	주류	과실주, 리큐르, 소주, 약주, 일반증류주, 청주, 탁주 등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등
	인삼제품류	홍삼, 백삼, 태극삼, 기타 인삼가공품 등
	김치류	김치, 절임류 등
	축산제품류	순대, 육포 등
	기타식품류	메주, 식포, 전분, 콩나물, 숙주나물 등
	임산물류	목공예품, 죽세공품
기타가공품	삼배, 모시, 화문석 등	

출처 : 서정욱, 2006, “지리적 표시제 도입이 지역 문화산업 진흥에 미치는 영향 -보성녹차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2), p. 233에서 재인용.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절차는 <그림 1>과 같이 ‘신청, 심사, 등록신청공고, 이의제기 및 심사, 등록공고, 표시사용 및 사후관리’의 7단계로 나누어진다. 이의제기 및 심사 단계에서 이의 제기가 없다면 등록단계로 진행되며, 이의 제기 후 심사에서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부적합통보를 받게 된다. 부적합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소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지리적 표시등록이 가능하다.



그림 1.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절차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신청인은 등록신청서와 8가지 필요서류²¹⁾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²²⁾(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 표시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심사기준은 크게 5가지로서, 해당 품목이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산물인지,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해당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인지 여부와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와 해당 품목이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은 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그리고 신청 법인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 대부분을 참여시켜 조직화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자의 참여를 제약하지 않으며 법인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품목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품질기준과 품질관리계획, 생산계획 등이 적정한지 여부도 심사하고 있다²³⁾.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21) 정관(법인에 한함) 1부,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 1부,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1부,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1부,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1부, 자체품질기준 1부, 품질관리계획서 1부

22) 법조문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지리적표시’,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과 같이 쓰는 것은 본 연구에서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표 3. 지리적 표시제의 심사기준

요건	내용
지역성	-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산물 또는 주원료로 가공된 품목 여부
유명성	-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
역사성	- 해당 품목이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은지 여부
지리적 특성	- 해당 품목의 명성·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여부
조직화된 생산자	- 법인이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지속적인 유지·발전 가능성 여부 - 품질수준유지를 위한 자체품질기준, 품질관리계획, 생산계획의 적정성 여부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

지리적 표시 심사기준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당해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 널리 알려졌을 것, 즉 지역특산물로서 예전부터 유명하다는 명성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신청 품목의 명성이 국내 및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시하여야 한다. 고문헌에 실린 역사적인 자료, 신문이나 방송에 실린 자료, 품평회나 지역특산물대회 등에서 받은 수상실적 등이 증명자료가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도 대상 품목의 명성을 입증하는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동종의 품목과 품질 면에서 차별화됨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품질차별화에 대한 증명은, 신청품목의 유효성분 함량에 관련 자료와 같이 객관성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차별화된 품질의 상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제시되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자체적인 품질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기준에는 여타 유사품목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해품목의 명성, 품질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산지의 자연 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 요인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신청대상 지역의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지역의 기후·토양 등과 같은 지리적 특성에 영향을 받거나 그 지역만의 독특한 제조방법 등에 의해 품질차별화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강수량 또는 일조량의 차이, 토양 분석표 상의 성분차이, 평균표고와 평균기온의 차이 등의 입증이 필요하다. 지리적 표시 등록 농산물은 신청지역 내에서 생산되어야 하지만, 신청대상 지역은 반드시 행정구역을 따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한 시·군 내에서도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과 산을 등지고 있는 지역은 자연조건이 전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품질이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는 보성녹차를 사례로 상기 심사기준을 예시한 것이다.

표 4. 보성녹차 등록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1. 지리적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 보성녹차(우전, 곡우, 제작) ○ 영문 : Boseong Green Tea
2.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 : 총질소 4.6%, 탄닌 14.1%, 카페인 3.3%, 염록소 4.6, 아미노산 1.347mg/100g ○ 품질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 : 재래종 - 경작 : 퇴비위주 경작, 친환경적 병충해 방제 - 가공 : 우전, 곡우, 제작을 손으로 채취 빠른 시간 내에 덩음 또는 증멸 처리로 발효를 중지시키고 유념작업을 7~8회 반복 ○ 기상 : 연 평균 13.4℃, 강우량 1,459mm로 차나무 재배에 알맞은 조건임. 특히 3월부터 10월 생육기 중에 1,310mm의 많은 비가 내려 차의 생육을 좋게 해줌 ○ 토양 : 사양토로 배수가 잘 됨. ○ 인과관계 : 토양, 기후, 지형, 호수, 바다 등이 잘 조화를 이루어 보성차 특유의 품질을 유지해 주고 있음.
3. 유명 특산품의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상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국여지승람 보성군편(1478년)에 토산품으로 기록 - 산양지(보성군 옛지명)에 토산품으로 차생산 기록 ○ 국내외 인지도 : 1985년부터 “보성다향제” 개최 ○ 수상경력 : 2000.6월 한·중·일 공동주최 중국주관 제2회 국제차박람회 출품 “차 영예상” 수상 ○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3개
4. 대상지역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상 전남 보성군 관내
5. 자체품질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가공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 표준규격보다 엄격한 기준설정 ○ 품질기준 : 회분 6% 이내, 채점기준 4점 이상 ○ 등급기준 : 특급(우전, 곡우, 제작) ○ 원료기준 : 토양관리 및 병충해방제 방법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비 : 연간 ha당 20톤 이상을 사용하되, 토양염류 집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 - 병충해방제 :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방제 ○ ha당 특급차 최대채취량은 연간 300kg 이내
6. 자체품질 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품질기준에 기초한 자율적 품질관리 ○ 매년 1월 말 이전에 자체품질관리를 위한 조사계획 수립 이행

출처 : 서정욱, 2006, 지리적 표시제 도입이 지역 문화산업 진흥에 미치는 영향

-보성녹차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1). p.234.

성명환(2002)에서 재인용.

2) 국외에서의 개념

(1) EU의 지리적 표시 등록 제도

EU는 지리적 표시를 원산지명칭보호(PDO)와 지리적표시보호(PGI)²⁴)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AOC나 이탈리아의 DOC, 스페인의 denominacion de origen은 모두 원산지명칭보호(PDO)를 의미한다. 또한 다음의 3가지 기준에 의해 상품을 보호하고 있다. 첫째, 지리적 표시에 대한 유사·허위표시, 번역이 되어 사용되는 경우이다. 둘째, ‘kind(종류)’, ‘type(유형)’, ‘style(양식·방식)’, imitation(모조품)’, ‘~산’, ‘~식’, ‘~풍’, ‘유사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모든 표시의 경우이다. 셋째, 내·외부포장, 광고물 또는 관계서류, 용기의 포장 등에 잘못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경우이다. 이상의 경우는 상품보호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벌하고 있다.

(2) 프랑스의 지리적 표시 제도

프랑스에서는 1900년대를 전후하여 외국산 포도 및 포도주에 밀려 품질하락, 가격폭락, 표시문란 등 자국산 포도 관련산업의 위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포도주산업의 부흥을 위해 정부가 와인생산지를 규정하고, 알코올함량·포도품종·재배방법과 같은 와인양조기준을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AOC(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 원산지명칭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1935년에 ‘포도주 및 증류주 국가위원회’를 설치하고, 1947년에 INAO (Institute National des Appellations d'Origine : 국립원산지명칭관리소)²⁵)를

24) 원산지명칭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는 원료의 생산과 가공과정 모두가 해당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리적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는 생산, 제조 및 처리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지역과 연계성이 있으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원료를 외지에서 가져오더라도 어느 지역의 특수한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되면 PGI에 해당되며, 보호수준은 PDO와 동일하다.

25) INAO는 등록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생산자단체(가공 및 유통업체 포함)들의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하여 INAO에 제출한다. 그러면 INAO에서 전문가 그룹의

설치하면서 AOC제도가 본격화되었다. 1955년에 치즈에 대한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1990년에 기타의 모든 농산물 및 식료품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등 AOC는 품질관리, 농가소득보장, 소비자보호 등 측면에서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 현재 와인, 증류주, 치즈·버터, 농축우유, 건포도, 당근, 천연수(광천수 등)이 PDO 또는 PGI 보호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다²⁶⁾.

(3) 벨기에의 지리적 표시 사례

Bel'Ardenne는 1902년에 설립한 DETRY라는 육가공업체의 방계공장으로 Wallon 지방 Bastonge군에 위치하며, 주요 생산품목은 햄·소시지·베이컨 등으로 11종류의 돈육가공품을 주당 약 20톤씩 생산하고 있다. 원료는 현지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가져오지만 지역의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 보호대상으로 선정되었다. 1991년 벨기에 정부로부터 “Jambom d'Ardenne”라는 지리적 표시 사용을 허가받고, 그 후 1996년 7월 EU규정에 의해 지리적 표시(PGI)로 등록되었다. 이 회사의 햄은, 너도밤나무와 참나무 톱밥에 향신료를 첨가한 약한 불로 8주일 이상 서서히 그을리는, 지역의 고유한 제조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 품목으로 선정되었다. 햄이 가지는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여 지리적 표시 품목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제조하는 돈육가공품인 소시지나 베이컨 등은 지리적 표시의 대상이 아니다. 생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는 품질을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차별화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타사와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선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검도를 거쳐 품목별 규정에 대한 초안을 마련한 다음 농무성에 제출하고, 농무성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다.

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PROMAG는 검사기관으로서,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생산량을 확인하고 스탬프를 공급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생산량에 따라 15~30일간 사용할 스탬프를 미리 판매하는 데 스탬프 당 10BF(Belgische Frank, 10BF은 약 250 원)이다. 생산업체는 생산계획과 실제 생산량을 PROMAG에 신고해야 하며, PROMAG는 수시로 표본을 추출하며 지리적 표시제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²⁷⁾.

2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2. 지리적 표시제의 실시

1) 법적 근거

지리적 표시제는 <표 5>와 같이 농산물품질관리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표 5. 지리적 표시제의 법적 근거

법	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3조, 제8조~제8조의21, 제35조, 제36조, 제38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0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0조의2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작성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3조, 제8조~제8조의21, 제35조, 제36조, 제3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제3조(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제8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8조의 2(지리적표시권), 제8조의 3(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 제8조의 4(권리침해의 금지청구권 등), 제8조의 5(손해배상청구권 등), 제8조의 6(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8조의 7(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8조의 8(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8조의 9(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제8조의 21(「특허법」 등의 준용), 제35조~제36조(벌칙), 제38조(과태료)으로 되어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 제8조(분과위원

회의 구성), 제9조(분과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2조(운영 세칙), 제14조(지리적표시 대상지역 범위), 제15조(지리적표시 등록의 신청자격), 제16조(지리적표시의 심의·광고·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제18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19조(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제20조(심판위원회의 운영)으로 되어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0조의 1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변경 및 이의신청 등), 제19조(지리적표시의 등록광고 등), 제2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제20조의2(심판청구서)~제20조의12(재심청구서)으로 되어 있다.

2) 실시 경과와 현황

우리나라에서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하여 처음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농산물품질관리법(1999.07.01.)이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지리적 표시 등록제의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시행근거가 되었다. 그 다음해,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운용규정도 제정(2000.09.21.)되었다. 그 다음해에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다시 구성(2001.08.25.)되었다. 2002년에는 보성녹차를 지리적 표시 제1호로 최초 등록하였으며 매년 등록이 이어져 2011년에는 78건에 이르렀다. 2012년 현재도 등록이 진행 중이며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등록현황은 <표 6>과 같다. 그러한 가운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추가적으로 지적재산권 강화, 심판위원회, 변경신청절차 규정(2009.12.10)이 마련되었다.

표 6. 연도별 부문별 지리적 표시제 등록 현황 (2012.04 기준)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04	계
농축산물	1	1	1	10	12	16	11	8	12	8	2	80
임산물	-	-	-	-	8	5	5	8	6	7	2	41
수산물	-	-	-	-	-	-	-	8	1	2	1	12
계	1	1	1	10	20	21	16	24	19	17	5	133

출처 : 김원오 외, 2011, 국내 지리적 표시제도의 통합화 방안 연구, 사단법인 대한상표협회. p. 220 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2011.05 ~ 2012.04 추가 내용을 반영해 작성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운영되는 품목과 지역은 <그림 2, 3, 4>와 <부록 1, 2, 3>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자세한 지역별, 품목별, 역사성·전통성 측면의 분석은 III장에서 다룰 것이며, 이 장에서는 지리적 표시의 분포를 다룰 것이다.

지리적 표시의 범위는 가장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그 행정구역의 규모는 국내, 시·군, 면, 그리고 해발고도와 같은 자연범위가 포함된다. 가장 많은 경우는 물론 시·군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진부당귀와 같이 면과 해발고도의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범위의 설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원인으로 보인다. 우선 '지리적'이라는 어휘가 가진 의미에서 비롯되는 바와 같이, 기후·도양과 같은 자연적 환경이 첫 번째 원인이다. 그리고 자연적 환경만큼 중요한 인문적 환경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합·유통과 같은 전반적인 문화관련 요소들을 포함하는, 인문적 환경이 두 번째 원인이다. 더불어 세 번째 원인은 지속적인 관리가 용이해야 하므로 행정적인 편의를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자연환경·인문환경과 행정구역의 두 가지 기준은 지리적 표시제의 본 목적에서 꼭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덕유산고로쇠수액과 같이 행정구역을 넘어서 생산자들이

힘을 모아 지리적 특성을 가진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통해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사례로 볼 수 있다.

농축산물 지리적 표시제는 <그림 2>와 같이, 가장 많은 80개의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품목도 매우 다양하다. 쌀·찰쌀보리쌀·올벼쌀 등 곡류, 파·마늘·양파·고추 등 양념류, 사과·딸기·복숭아·수박 등 과일류, 한우·돼지 등 식육류, 배추·파·미나리 등 채소류, 녹차·백련차 등 다류, 황기·당귀·쑥 등 약재류, 삼베·한과·떡 등 가공품 등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를 대상지역으로 하는 인삼류(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태극삼, 고려수삼,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도 포함하고 있다. 쌀, 한우, 사과, 녹차, 마늘, 고춧가루 등 품목은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이 많아 지역별 고유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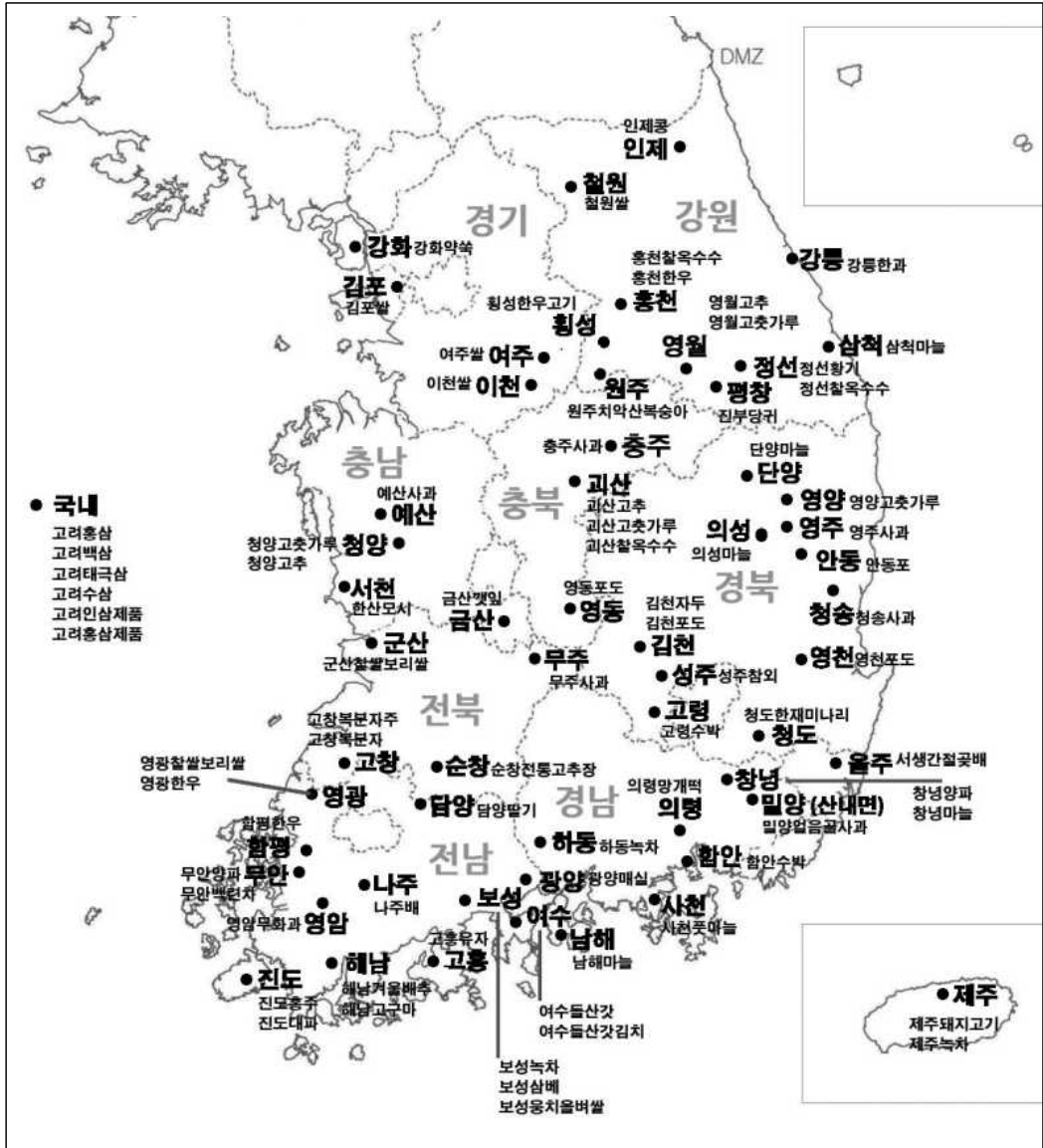


그림 2. 농축산물 지리적 표시제 현황(2012.04 기준)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는 <그림 3>과 같이 41개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어 있다. 대상품목은 잣·밤 등 견과류, 고사리·미역취·곰취·곤드레·고비 등 산채류, 송이·표고 등 버섯류, 오미자·구기자·산수유 등 약재류 등 다양하다. 분포를 보면, 강원도와 경상도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가 많다. 그 가운데 경상남도가 가장 많은 지역과 품목을 기록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경북 울릉군에서 등록된 품목이 5가지로 많은데, 이는 울릉군의 고유한 자연환경이 잘 반영된 예로 보인다. 고로쇠 수액이 울릉도, 광양(백운산 지역), 덕유산 지역의 세 곳에 등록되어 있는데, 행정구역이 아닌 자연경계를 우선시하고 있다.



그림 3.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 현황(2012.04 기준)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는 <그림 4>와 같이 경상남도과 전라남도에만 등록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전라남도에 큰 편재성을 보인다. 또한 수산물 지리적 표시 자체가, 전라남도 가운데서도 한정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의 규모와 분포가, 농축임산물 지리적 표시제보다 작고 남해안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의 수산물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해안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고문헌에 소개되어 있는 수산물은, 그 품목의 다양함에서도, 그 지역의 절대적인 수에서도 이전의 해석이 그릇된 것임을 증명해준다. 따라서 수산물 지리적 표시는 제도적 개선과 지자체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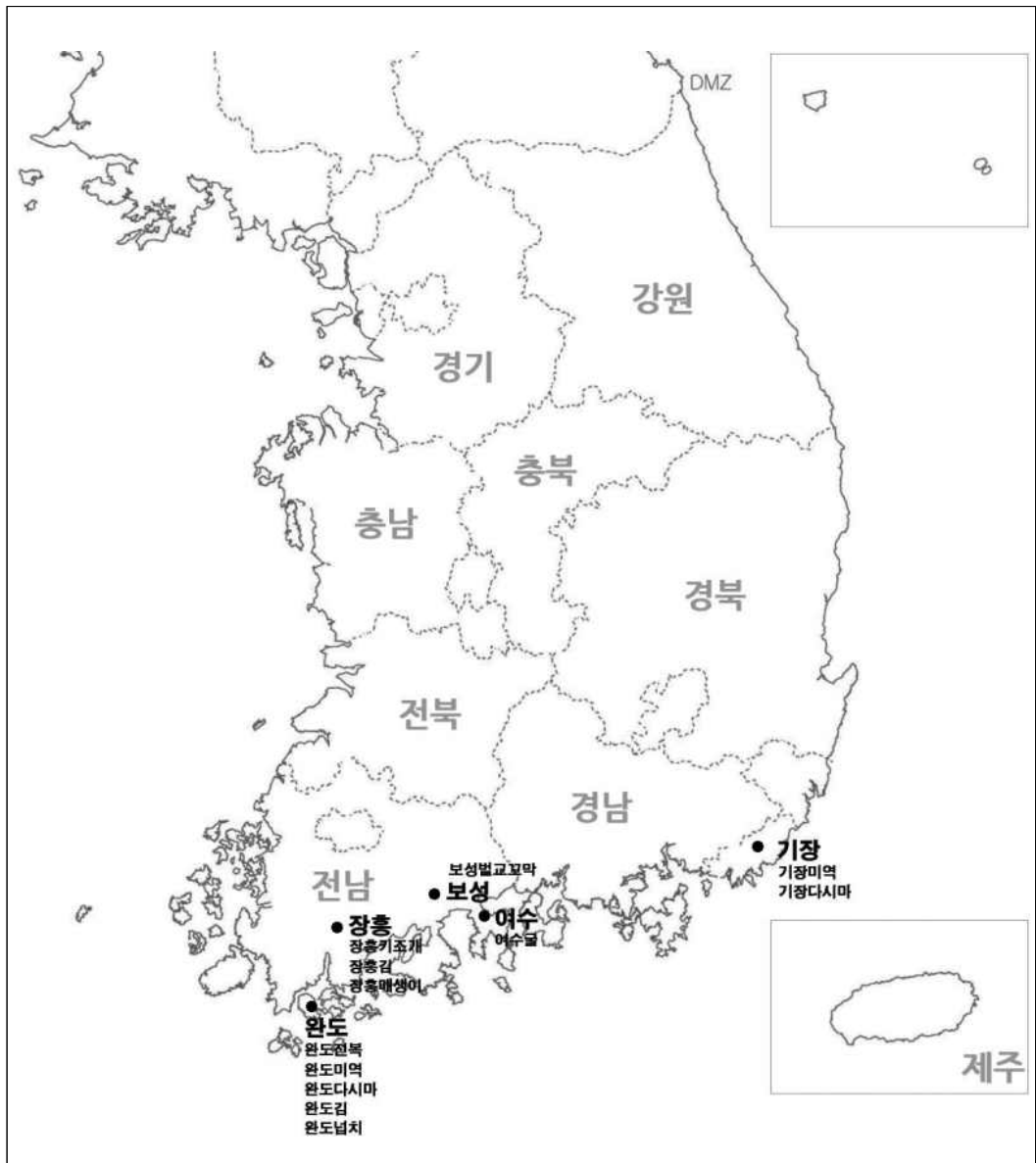


그림 4.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현황(2012.04 기준)

3. 유사 제도와의 관련성

이 절에서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지리적 표시 등록제(지리적 표시제)를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지리적 표시제의 독자적인 성격을 파악할 것이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제도이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표법에 의한 제도이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두 제도는 등록요건에 ‘대상지역 내에서 생산·가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허위표시행위에 대하여 각각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²⁸⁾, 허위표시행위의 범주는 판매행위 뿐만 아니라 광고·보관·진열·포장 등의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사후관리가 소홀할 경우, 제3자에 심판청구에 의한 등록취소가 가능한 점도 두 제도의 공통점이다.

두 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지리적 표시는 농산물 및 가공품을 대상으로 하는데, 단체표장은 등록대상에 제한이 없어 모든 상품이 등록가능하다. 이천도자기, 남원목기 등 수공예품이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는 등록하면 그 효과가 항구적인데, 단체표장은 그 효과가 10년이며 계속 갱신이 가능하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지리적 표시는 행정청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의 직권취소가 가능한데, 단체표장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그 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제도는 농식품인증제도와 원산지 관리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농식품인증제도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제도,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 우수식품인증기관지정제도, 지리적표시제도, 술품질인증제도가 포함된다. 원산지 관리제도에는 농식품원산지표시, 음식적원산지표시, 쇠고기이력제, GM O²⁹⁾표시관리, LMO³⁰⁾수입승인 및 안전관리, 인삼류 사후관리가 포함된다.

28)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6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표법 제9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Ⅲ. 지리적 표시제의 유형 및 분석

이 장에서는 지리적 표시제를 지역별 분석, 품목별 분석, 역사성·전통성·지역성을 비교하여 지리적 표시제를 유형화할 것이다. 지역별 분석을 통해 핵심지역과 주변지역(core-periphery)을 분석할 것이다. 품목별 분석을 통해 어떤 품목들이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는지, 어떤 품목은 빈도가 높고 어떤 품목은 빈도가 낮은지 분석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별 품목별 분석결과를 역사지리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역사성·전통성·지역성을 분석한 뒤 지리적 표시제를 유형화할 것이다.

1. 지역별 분석

2002년 보성녹차가 농축산물 지리적 표시 제1호로 등록된 이래, 2012년 4월 기준으로 133개의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어 있다. 이 133개의 지리적 표시의 등록지역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특별시(국내를 대상지역으로 하는 품목 포함)으로 구분하였다. 지리적 표시제가 처음 도입된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단 3개의 지리적 표시만이 등록되어 있다가, 2005년부터 다양한 품목들이 여러 지역에서 등록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부터는 임산물도 등록되기 시작했으며, 경상북도는 울릉도의 산채류 4가지를 임산물 지리적 표시로 등록했다. 2007년, 2008년에는 농축산물과 임산물이 꾸준히 등록되었다. 2009년부터는 수산물도 등록되기 시작하였다.

29)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농산물.

30) Living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생물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지역은 전라남도(34개), 경상북도(23개), 강원도(20개) 순이며, 가장 적은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2개)와 경기도(4개)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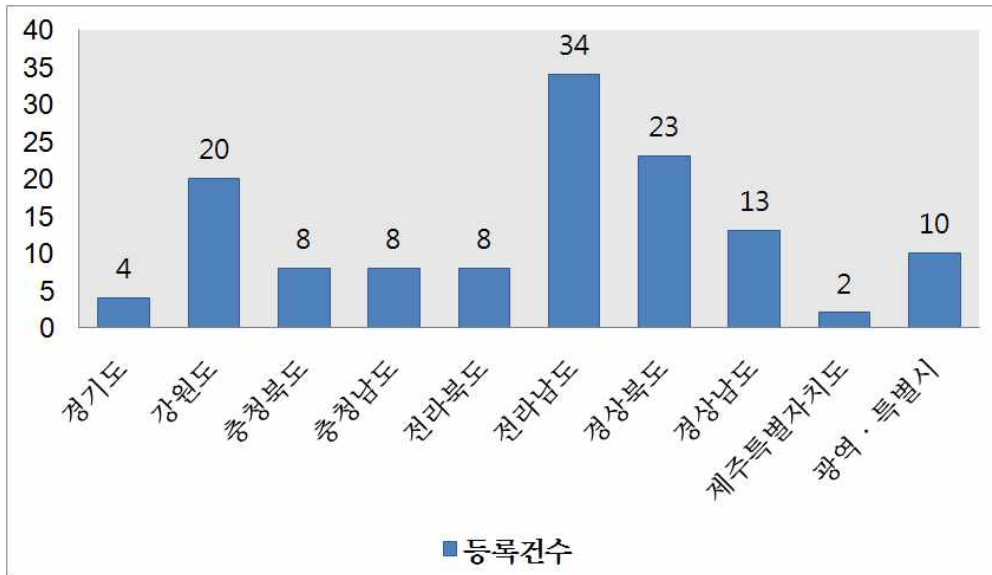


그림5. 지역별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건수(2012.04 기준)

이렇게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은,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지자체의 적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 표시는,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품목수가 많고 적음에도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생산자 단체, 법인,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에도 영향을 받는다.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에 뛰어난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품목들이 많은 것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경기도에서 고유한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품목들이 많다. 연도별 지역별 품목별 지리적 표시제 등록 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연도별 지역별 부문별 지리적 표시제 등록 현황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시· 특별시
		133										
'02	1	1						보성녹차				
		-										
		-										
'03	1	1								하동녹차		
		-										
		-										
'04	1	1					고창 복분자주					
		-										
		-										
'05	10	10	이천쌀	철원쌀	괴산고추, 괴산 고춧가루	서산 마늘	순창전통 고추장	해남 겨울배추	영양 고춧가루, 의성마늘, 성주참외			
		-										
		-										
'06	20	12	홍천 찰옥수수, 횡성 한우고기	충주사과	한산 모시		고흥유자	안동포	밀양사과	제주 돼지고기	강화약쑥,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 태극삼	
		8	양양 송이		정안밤		장흥 표고버섯	울릉도삼나물, 울릉도미역취, 울릉도참고비, 울릉도 부지깁이	산청곶감			
		-										

'07	21	16	여주쌀	정선황기 정선찰옥수수, 진부당귀	단양마늘	청양고추, 청양고춧가루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무안양파, 무안백련차, 광양매실	청송사과	남해마늘, 창녕양파	
		5				청양구기자			경산대추, 봉화송이, 상주곶감	창선고사리	
		-									
'08	16	11	여주 고구마	홍천한우, 영월고추			군산찰쌀 보리쌀	해남고구마, 영암무화과, 보성삼베		함안수박	제주녹차
		5				천안호두		구례산수유, 광양고로쇠수액, 영암대봉감	영덕송이		
		-									
'09	24	8		삼척마늘	영동포도		무주사과	함평한우	영천포도, 영주사과, 김천자두		
		8	가평잣	횡성더덕, 홍천잣	영동곶감		무주머루		문경오미자, 울진송이	악양대봉감	
		8						보성별교꼬막, 완도전복, 완도미역, 완도다시마, 장흥키조개, 완도깍			
'10	19	12		치악산		예산		진도대과,	김천포도,	사천	

			복숭아, 영월 고춧가루		사과		영광찰쌀 보리쌀, 여수 돌산갓, 여수돌산갓 김치, 담양딸기, 보성 응치올벼쌀	청도한재 미나리	꽃마늘		
		6	정선 곤드레, 태백곰취, 인제곰취	보은대추				청도반시	거제 맹종죽순		
		1					완도넙치				
'11	12	3	강릉한과					고령수박	의령 망개떡		
		7	횡성참숯	충주밤		덕유산 고로쇠 수액, 무주, 머루와인	진도 구기자, 담양죽순		함양곶감		
		2					장흥 무산김, 장흥 매생이				
'12. 04	5	2					나주배		창녕마늘		
		2	강릉 개두릅					울릉도 우산 고로쇠 수액			
		1					여수굴				

출처 : 최경환, 2011, 지리적 표시제의 운영실태, 지리적 표시제도의 통합화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대한상표협회, p. 7.

지역적으로 지리적 표시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흥미로운 것은 대상지역의 scale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별히 ‘고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인삼류는 국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쌀은 전국 생산임에도 특정지역이 지리적 표시의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다. 시·군 단위로 등록된 경우가 가장 많으나 면 단위, 리 단위, 해발고도를 적용한 등의 사례에서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요소를 보다 분명히 밝힘으로서 지리적 표시품이 가지는 지리적인 독자성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개개의 사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III. - 2. 품목별 분석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지역적 분포와 규모 관련하여 특징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농축산물 지리적 표시제에서 가장 집중된 지역은 <표 8>과 같이 농축임수산물 전체와 동일하게 전라남도이며, 그 다음은 강원도, 경상북도 순이다.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이다.

표 8. 농축산물 지리적 표시제 도별 분포표(2012.04 기준)

도별	시·군	계
	국내	6
경기	이천시 강화군 여주군 김포시	4
강원	철원군 홍천군2 횡성군 정선군2 평창군 영월군2 삼척시 원주시 강릉시 인제군	13
충북	괴산군3 청주시 단양군 영동군	6
충남	서천군 청양군2 예산군 금산군	5
경북	김천시2 청도군 고령군 영양군 의성군 성주군 안동시 청송군 영천시 영주시	11
경남	하동군 밀양시 남해군 창녕군2 함안군 사천시 의령군	8
전북	고창군2 순창군 군산시 무주군	5
전남	보성군3 해남군2 고흥군 진도군2 무안군2 광양시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여수시2 담양군 영광군 나주시	1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2	2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에서 <표 9>와 같이 가장 집중된 지역은 경상북도이며, 그 다음은 강원도이다. 경상북도에서는 울릉도에 등록된 품목이 많다. 지리적 표시의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이다.

표 9.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 도별 분포표(2012.04 기준)

도별	시·군	계
경기	가평군	1
강원	양양군 횡성군2 홍천군 정선군 태백시 인제군 강릉시	8
충북	영동군 보은군 충주시	3
충남	공주시 청양군 천안시	3
경북	울릉군5 경산시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문경시 울진군 청도군	12
경남	산청군 남해군 하동군 거제시 함양군	5
전북	무주군2	3
전남	장흥군 구례군 광양시 영암군 진도군 담양군	6
		41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는 <표 10>과 같이 매우 편재되어 있다. 수산물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지역은 경상남도과 전라남도 들 뿐이며, 대부분의 지리적 표시가 전라남도에 등록되어 있다.

표 10.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도별 분포표(2012.04 기준)

도별	시 · 군	계
경기		0
강원		0
충북		0
충남		0
경북		0
경남	기장군 2	2
전북		0
전남	보성군(별교읍), 완도군 5, 장흥군 3, 여수시	10
제주		0
		12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

2. 품목별 분석

앞 절에서는 품목을 기준으로 등록된 지역을 살펴보았으며, 이 절에서는 지역을 기준으로 등록된 품목을 살펴볼 것이다. 각 품목별 분류와 등록된 지역은 <표 11>과 같다. **중고딕**체로 쓴 것은 지리적 표시제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양쪽에 모두 등록된 품목(지역)이다.

표 11. 지리적 표시제 등록 품목별 현황(2012.04 기준)

부문별	품목	지리적 표시제 등록 지역(품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지역(품목)	
농축산물 (36)	곡 류	쌀	이천, 여주, 철원(3)	
		찰쌀보리쌀	군산 , 영광(2)	
		웅치올벼쌀	보성	
		찰옥수수	정선, 홍천	
	채소류	마늘	삼척 , 단양, 서산 , 의성, 남해(5)	
		풋마늘	사천	
		고추	영월, 괴산, 청양(3)	음성
		고춧가루	영월, 괴산, 청양, 영양(4)	
		겨울배추	해남	
		대파	진도	
		양파	무안, 창녕	
		갓	여수	
	과실류	미나리	청도	
		복숭아	원주(치악산복숭아)	
		포도	영동, 영천 , 김천	상주, 영월
		사과	충주, 예산 , 무주 , 영주 , 청송, 밀양(얼음골사과)(5)	안동, 거창
		배	울주(서생간절곶배)	천안, 광양
		매실	광양	
		자두	김천	
		무화과	영암	

	약재류	황기	정선	
		당귀	평창	
		복분자	고창	
		오미자	문경	
		약쑥	강화	
	식육류	한우(고기)	횡성, 홍천, 함평(3)	이천, 안동, 광양
		돼지(고기)	제주	
	직물류	삼베	안동(포), 서천(한산모시), 보성	
	다 류	녹차	보성 , 하동, 제주(3)	
		연	무안(백련차) ³¹⁾	
	서 류	고구마	여주, 해남	
	과자류	망개떡	의령	
	임산물 (23)	견과류	잣	가평, 홍천
밤			공주(정안밤), 충주	
호두			천안	
버섯류		송이	양양 , 봉화, 영덕, 울진(4)	
		표고버섯	장흥	
산채류		곰취	인제, 태백	
		곤드레	정선	
		더덕	횡성	
		삼나물	울릉	
		미역취	울릉	
		참고비	울릉	
		부지깅이	울릉	
고사리		남해(창선고사리)		
과실류		곶감	영동, 상주, 산청(3)	광양
		대봉감	영암, 하동(악양대봉감)	
		대추	보은, 경산	
		머루	무주	
주 류		머루와인	무주	
임산물류		고로쇠수액	무주, 광양, 무주	남원
		죽순	거제(맹종죽순), 담양	
		숯	횡성	
약재류		산수유	구례	
		구기자	청양, 진도	
수산물 (9)	패 류	꼬막	보성	

	해조류	미역	완도, 기장	
		다시마	완도, 기장	
		김	완도, 장흥	
		매생이	장흥	
	어류	넙치	완도	
가공품 (7)	장 류	고추장	순창	
	주 류	복분자주	고창	
		홍주	진도	
	김치류	갯김치	여수	
	과실류	반시	청도	
	과자류	한과	강릉	
	인삼류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태극삼, 고려수삼,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전국

출처: 김원오 외, 2011, 국내 지리적 표시제도의 통합화 방안 연구, 사단법인 대한상표협회. pp. 217~291. 의 내용에 연구자가 <표 2>를 근거로 부문별 세부기준을 추가하여 작성

133개 지리적 표시 가운데 지역의 중복을 포함한 부문별 품목은 다음과 같다. 농·축산물로 등록된 품목은 36개, 임산물로 등록된 품목은 23개, 수산물로 등록된 품목은 9개, 가공품으로 등록된 품목은 7개 이다. 농·축·임산물 지리적 표시제에서 지역이 중복되는 품목은 쌀, 사과, 한우, 녹차, 마늘, 고춧가루, 송이, 꽃감이다. 따라서 지역이 중복되는 품목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고유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품목 수가 적은 수산물과 가공품의 품목개발 필요성도 제시된다.

31) 등록된 품목은 무안 백련차이므로 다류로 분류함

3. 역사성 · 전통성 · 지역성 비교

이 절에서는 지리적 표시제 품목이 가지는 역사성·전통성·지역성을 규명하기 위해, 기록이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지리지(地理志)의 「토산(土産)」 조를 분석할 것이다. 지리지(地理志)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총체적 기록으로서, 지역적 범위와 대상에 따라 전국지리지(全國地理志)와 읍지(邑誌)로, 편찬자의 성격에 따라 관찬지리지(官撰地理志)와 사찬지리지(私撰地理志)로 나눌 수 있다. 여지(輿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편찬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을 수록하는 장점 대신 요점만을 다루다 보니 모두 상세하게 기록할 수 없는 단점도 있다. 읍지(邑誌)는 지방의 부·목·군·현을 단위로 하여 지역에서 편찬하여 고을의 실정을 상세히 기록할 수 있다. 관찬지리지(官撰地理志)는 일률적인 체제로 편찬되므로, 지역 간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비교하는 데 좋은 자료를 제공하며, 개인의 영향력이 관여된 여지가 적다. 사찬지리지(私撰地理志) 또는 민찬지리지(民撰地理志)는 편찬자의 의도, 성향, 지역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며, 편찬욕구를 뚜렷하게 가지고 작성하므로 내용의 정확성과 풍부함에서도 뛰어난 지리지가 많다. 그러나 기록의 공식성이 부족하고 편찬자의 주관이 깊게 작용하며 일관된 체제를 보이지 않는 등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³²⁾.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의 각 시기를 대표하는 전국지리지인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대동지지(大東地志)』를 선택하여 각각 「토산(土産)」 조를 분석하였다. 「토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기록한 것으로, 지리지 별로 내용은 같으나 명칭이 다르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서는 「토의(土宜)」, 「토공(土貢)」, 「토산(土産)」으

32) 양보경, 2001, “고산자 김정호의 지리지 편찬과 그 의의”,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 용역 논문집. pp. 103~145.

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토산(土産)」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는 「물산(物産)」으로 기록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항목에 대하여 가부(可否)를 따져서 생산되지 않는 것에는 ‘지금은 나지 않음’이라는 기록을 해 놓았다. 이를 통해 ‘지금은 나지 않음’의 기록이 없는 지역과 품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여지도서』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지도서』에서는 「진공(進貢)」도 함께 남아있어, 「물산」과의 품목 차이를 통해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대동지지(大東地志)』는 고산자 김정호가 만든 사찬지리지로서, 「토산(土産)」으로 기록하고 있다. 개인의 업적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치 자세한 기록임과 동시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신지 않아, 대한 제국 직전까지 조선의 지역특산물을 반영하였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는 1454년(단종2)에 완성되었으므로 15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신증된 시기인 1530년(중종 25)을 기준으로 16세기, 『여지도서(輿地圖書)』는 엮은 때인 1765년(영조 41)을 기준으로 18세기, 『대동지지(大東地志)』는 보완된 1866년(고종 3)을 기준으로 19세기를 대표하는 지리지라 할 수 있다. 이 지리지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지리적 표시들이 가지는 역사성을 분석해보고 잘 부합하는 지역·품목과 잘 부합하지 않는 지역·품목에 대해 고찰하였다. 네 종의 지리지에 수록된 각 지역의 「토산」·「물산」항목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각 지역의 물산이 「토의」, 「토공」, 「토산」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이 중 「토의」는 주로 일상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곡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산 항목에서는 앞서 『세종실록』 「지리지」와 달리 관서의 공간에서 공물과 진상에 해당되는 것만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산」이란 명칭은 「토의」와 같이 일반적인 곡물보다는 그 지역의 ‘토산물(특산물)’을 적어놓으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토산물의 산지 등의 표기에서도 『여지도서』 「물산(物産)」 조항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여지도서』의 「물산」 조항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없는 각종 해산물, 약재, 과일, 조류, 짐승, 채소 등의 새로운 토산물이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여지도서』의 「물산」 조항은 대동법 실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진상물자를 책정하여 궁중에 상납하게 할 때, 그 책정 기준으로 삼았던 토산물의 자료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여지도서』의 「물산」 조항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산」 조항과 자료적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간혹 「물산」 대신 「토산」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두 조항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고을의 토산물을 수록한 것으로, 표기만 다를 뿐 같은 조항임을 알 수 있다³³⁾.”

“『대동지지』의 「토산」 항목에 있는 내용들은 바로 정조와 순조 때의 여러 읍지에 있었던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호는 30년 가까이 진척시킨 지리지의 편찬 작업 속에서 수많은 대조를 통한 검토를 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용의 철저한 사실성과 고증을 기초로 한 지지 편찬의 과학적 자세,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지역의 변화상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온 것이다. 이는 각 군현의 「토산」 항목에 적혀 있는 내용과 동일한 지리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토산」 항목 역시 여러 지지를 비교·검토하면서 종합한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이다. 공안에 적힌 것을 옮긴 다른 지리지와는 달리,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각 군현에서 직접 작성한 물산 항목을 종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군현에서 생산되던 토산물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³⁴⁾.”

33) 서종태, 2006, “『輿地圖書』의 物産 조항 연구”,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제 25호, pp. 573~575.

34) 이기봉, 2003, “조선시대 전국지리지의 생산적 항목에 대한 검토”, 문화역사지리 15(3), p.13.

“ 조선전기와 후기를 대표하는 전국지리지 4종에 실려 있는 생산물 항목이 어떻게 편제되게 되었으며,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실록』 지리지의 「토의(土宜)」, 「토공(土貢)」, 「토산(土産)」 항목은 중앙에서 일정한 규식을 내리고 수정 과정을 거치는 등 전국적으로 철저한 조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의 어떤 지리지에서도 흉내 내지 못할 정도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산」 항목은 전국적인 조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앙에 보관되어 있던 공안의 공물과 진상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상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용해야 한다. 더구나 공물의 경우 각 군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여지도서』의 「물산」 항목은 각 군현에서 올린 것을 기반으로 편제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지방의 특산물 상황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함에서 군현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통계적인 측면에서 전국적인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료의 이용은 각 군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넷째, 『대동지지』의 「토산」 항목은 18세기 후반기와 19세기 초반기의 각종 지지에 대한 비교·검토의 과정을 통해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상대적으로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관찬지리지인 사찬지리지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직접 조사에 의해 작성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참고한 지리지 자체에서 오는 오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네 종의 전국지리지에 있는 생산물 항목의 내용을 동일한 입장에서 상호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통시적 측면에서의 자료 이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시기의 전국적 생산물의 분포를 이해하는 데는 네 종의 전국지리지 모두 자료로서의 가치

가 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네종의 지리지는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자료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선전기의 생산물 분포 상황은 『세종실록』 「지리지」의 것을 주요 자료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것을 보조 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조선 후기의 생산물 분포 상황은 『대동지지』의 것을 주요 자료로, 『여지도서』의 것을 보조 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도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을 뿐, 세부적인 내용측면으로는 각 자료마다 자세한 검토과정을 거쳐 이용해야 할 것이다³⁵⁾.”

따라서 지리적 표시의 역사성·전통성·지역성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지리지들과 현재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도별로 비교하였다³⁶⁾.

35) 이기봉, 2003, “조선시대 전국지리지의 생산적 항목에 대한 검토”, 문화역사지리 15(3), p.2, p.6, p.14.

36) 심규영, 2004, “日帝強占期 行政區域 改編의 復元과 그 地圖化-《朝鮮十三道圖》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 III-3 의 행정구역 통합은 위 논문을 참고하였다.

1) 강원도

강원도 전체에 대한 기록 중 『여지도서』의 「진공(進貢)」을 보면, 다래와 포도가 나온다. 다래와 포도는 기록 가운데 전국적으로 매우 희소하다. 실제 포도로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된 지역은 경북 영천시(영천포도)와 경북 김천시(김천포도)이다. 다래는 야생산과로서 kiwi, chinese gooseberry로 불리며 머루와 그 성질이 비슷하다. 전북 무주군에 등록된 머루와 머루와인이 전국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데 비해 다래는 지리적 표시 품목은 아니지만 강원도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므로 역사성의 의미가 있다.

강릉에서도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부터 『여지도서』에 이르기까지 모시, 잣, 전복, 미역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강릉시에서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한과와 두릅이다. 두릅은 『여지도서』 「진공」에 기록되어 있으니 일치한다. 다만 『여지도서』의 독활(獨活, 멧두릅)과 오늘날의 두릅을 동일하게 이해해도 좋은 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강릉한과는 궁중의 산자를 배워다가 발전시킨 것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지리지 상으로는 알 수 없다. 『삼국유사』, 『고려사』와 같은 문헌을 통해 삼국시대부터 한과가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지만 오래 두고 먹을 수도 없고, 전통성을 가졌다 해도 그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리지에는 의미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양양송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서 각각 송이가 확인되었으므로 역사성이 증명된 경우이다. 송이는 양양군 외에도 경북 봉화군, 영덕군, 울진군에도 등록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많이 등장한 품목이다.

정선군에 등록된 품목은 황기, 찰옥수수, 곤드레 이지만 문헌상에는 관련 기록이 없다. 정선군에서 역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인삼과 송이로,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에서 기록하고 있다. 인삼과 송이가 전국적으로 많이 기록된 품목이기는 하지만 정선군의 역사

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여지도서』에서는 나지 않는 것을 기록하였으므로 그 역으로 기록이 없는 정선군은 자료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평창군은 진부면 전역, 도암면 서부지역, 용평면 전역, 봉평면 동부지역, 대화면 북부지역의 해발 400m 이상 지역에 진부당귀가 등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의 「진공」에도 당귀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창군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 잣, 인삼, 송이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품목들에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에는 원주치악산복숭아가 등록되어 있으나 역사문헌에는 관련 기록이 없다. 강원도의 다래가 미후도(彌猴桃)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성을 찾아 보았지만 원주에는 관련 기록이 없다.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사과, 딸기, 자두, 수박의 경우도 문헌 기록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원주의 잣과 인삼은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에서 기록하고 있으며, 송이는 『여지도서』와 『대동지지』에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원주의 인삼은 『여지도서』의 「물산」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진공」에 기록되어 있기를, 품질이 좋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바친다는 부분으로 미루어 「물산」과 「진공」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영월군에 등록되어 있는 고추, 고춧가루는 다른 마늘, 양파 등의 양념과 같이 전국적으로 관련 기록이 없다. 영월의 잣과 송이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다.

홍천군은 잣, 한우, 찰옥수수가 지리적 표시에 등록되어 있다. 현재와 기록이 일치하는 것은 잣으로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에서 기록되어 있어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우와 찰옥수수는 관련 기록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관련 품목이 희소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역사성과 전통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읍지(邑誌) 등 좀 더 전문적인 자료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잣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된 지역은 가평군으로 가평군의 경우도 잣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다. 그렇지만 잣은 전국

적으로 그 기록이 매우 많으며, 홍천이나 가평처럼 반복되어 나오는 경우도 매우 많다.

삼척시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마늘이지만, 마늘은 전국적으로 관련 기록이 희소하다. 마늘로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지역은 삼척시 외에도 충북 단양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 경남 창녕군이며 풋마늘로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지역은 경남 사천시이다. 삼척시에서 역사 기록상으로 의미 있게 다루어진 품목은 인삼과 모시로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에서 기록하고 있다. 김, 미역, 전복도 『신증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서 기록하고 있다.

울진군은 현재 경상북도에 소속되어 있지만 『세종실록』 「지리지」가 기록될 당시에는 강원도 소속이었다. 현재의 울진군은 울진현과 평해군이 통합된 것이다. 기록상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울진현과 평해군의 송이가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울진군의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전복, 미역, 김 정도가 역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오미자의 경우는 울진현에서는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으나 평해군에서는 『세종실록』 「지리지」이후에 기록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강원도 지리적 표시제의 역사성 비교

현재 지명	역사 지명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土産	『여지도서』		『대동지지』 土産	지리적 표시제
		土宜	土貢	土産		物産	進貢		
강원도	강원도						전복, 김, 넙치, 배, 미역, 잣, 돼지, 쑥, 다래, 포도, 송이, 인삼, 두릅, 당귀, 오미자, 미나리		
강릉시	강릉대도호부	모시, 감, 밤	잣, 호두, 미역, 전복		모시, 잣, 송이, 인삼, 미역, 김, 전복, 넙치	모시, 잣, 송이, 김, 인삼, 미역, 전복, 당귀, 미나리, 오미자	두릅, 쑥, 넙치	김	한과, 두릅
양양군	양양도호부	감, 배, 밤	잣, 호두, 전복, 인삼		모시, 인삼, 송이, 김, 미역, 전복, 넙치	모시, 잣, 인삼, 오미자, 미역, 전복, 김, 송이	미나리, 쑥, 당귀, 두릅, 배		송이
정선군	정선군	배, 밤	인삼	송이	잣, 인삼, 송이	잣, 인삼, 송이, 오미자	당귀, 두릅, 쑥, 미나리		황기, 찰옥수수, 곤드레
평창군	평창군	콩,			잣, 인삼,	잣, 인삼,	당귀, 배,		당귀

		배, 밤			송이	송이, 오미자	미나리		(진부)	
원주시	원주목	배	잣, 인삼		잣, 인삼	잣, 오미자	인삼 ³⁷⁾ , 쑥, 송이, 미나리, 두릅, 당귀	송이	복숭아 (치악산)	
영월군	영월군	콩, 배, 밤, 대추	잣, 송이		잣, 인삼, 송이	인삼, 오미자	미나리, 쑥, 두릅, 당귀		고추, 고춧가루	
횡성군	횡성현	배	잣, 인삼		인삼	인삼, 오미자	송이, 두릅, 쑥, 당귀, 미나리		한우, 더덕, 참숯	
홍천군	홍천현	배, 밤	잣, 인삼		잣	오미자, 인삼, 잣	두릅, 당귀, 쑥, 미나리, 미역	배	잣 , 한우, 찰옥수수	
삼척시	삼척 도호부	모시, 감, 밤, 배	잣, 인삼		모시, 인삼, 송이, 김, 미역, 전복, 넙치	모시, 인삼, 송이, 김, 미역, 전복, 오미자	미나리, 쑥, 당귀, 두릅		마늘	
울진군	울진현	감, 밤, 배	호두, 미역, 전복, 인삼, 오미자		잣, 오미자, 송이 , 인삼, 넙치, 미역, 김, 당귀	넙치, 전복, 오미자, 쑥, 미나리	인삼, 미역		송이	경북
	평해군	밤	호두, 전복, 오미자,		미역, 김, 송이 , 인삼	전복, 미역, 김	인삼			경북

			인삼						
춘천시	춘천 도호부	배, 밤	인삼		잣, 인삼, 송이	잣, 오미자, 인삼, 송이, 다래, 포도, 두릅	미나리, 돼지		
화천군	낭천현				잣, 오미자, 인삼	오미자, 배, 당귀, 머루	다래, 포도, 잣	배	
양구군	양구현	콩, 배, 밤	인삼		잣, 인삼	오미자	잣, 미나리, 포도, 다래, 두릅,		
인제군	인제현	배, 밤	잣, 인삼		잣, 인삼	잣, 오미자	송이, 당귀		콩, 곰취
고성군	고성군	배, 밤	호두, 전복, 미역		인삼, 송이, 미역, 넙치	오미자, 인삼, 송이, 미역	전복, 넙치		

37) 치악산에서 나오는데, 매우 드물며 작고 가늘어 바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다른 고을에서 사다가 바친다. 변주승 외, 2009, (국역)여지도서, 전주대학교, 디자인흐름.

2) 경기도

여주군에는 쌀이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되어 있으나 여흥 도호부에도 천녕현에도 관련 기록이 없다. 또한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기록도 찾기 어렵다.

이천시에는 쌀로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되어 있으나 지리지의 음죽현, 이천현에 관련 기록이 없다.

가평군의 잣은 홍천잣의 경우와 유사하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토산」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잣이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에는 송이와 잣이 지금 나지 않는다고 기록하며, 「물산」에 아총(兒蔥, 파)이 포함되어 있다.

철원군에는 쌀이 등록되어 있는데 기록상 철원에서 유의미한 품목과는 차이가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토공」과 『여지도서』 「진공」에 당귀가, 『세종실록』 「지리지」 「토산」과 『신증동국여지승람』 「토산」, 『여지도서』 「물산」에 송이가 기록되어 있다.

강화군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 품목은 약쑥이다. 강화도호부에는 『세종실록』 「지리지」 토공물로서 사자발쑥이 적혀 있으나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으며, 남양도호부(지금의 화성시)나 부평도호부(지금의 인천광역시에 속함)처럼 품질이 좋다는 기록도 없다.

김포시에는 쌀이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소비자 인지도도 높지만 기록상으로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 쌀로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지역은 이천, 여주, 철원, 김포 이고 찰쌀보리쌀로는 군산, 영광, 웅치올벼쌀로는 보성이 등록되어 있으나 기록된 문헌은 없다. 이는 쌀이 전통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전국에서 제작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3. 경기도 지리적 표시의 역사성 비교

현재 지명	역사 지명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土産	『여지도서』		『대동지지』 土産	지리적 표시제	비 고
		土宜	土貢	土産		物産	進貢			
경기도	경기		밤, 대추, 감, 산삼, 사자발쑉							도 전체
광주시	광주목	대추	사자발쑉				밤, 사과			
여주군	여흥도호부								쌀	
	천녕현									
양평군	양근군		대추		송이	송이, 오미자		송이		
	지평현		대추	송이	송이, 오미자			[버섯]		송이, 오미자 지금은 나지 않음
이천시	음죽현								쌀	(장호원) 경기 이천, 충북 음성으로 편입
	이천현		대추							
과천시	과천현				(토산없음)			밤		
서울시 강서구	금천현									
서울시 양천구	양천현	벼, 콩								양천구와 강서구에 걸쳐 있음

양주시										
남양주시	양주 도호부			송이, 잣	송이, 잣	파, 돼지				
파주시	원평도 호부									
	교하현									
	적성현									
고양시	고양현									
장단군	임진현		사자발쑈							
포천시	포천현				송이	송이				
	영평현		오미자	인삼, 송이	인삼, 송이	오미자, 송이				
가평군	가평현		송이, 잣	잣	파		인삼	잣	송이, 잣 지금은 나지 않음 (대동) ‘~등은 전혀 없다’로 잘못된 것 수정	
수원시	수원 도호부		사자발쑈		굴	굴				사자발쑈 (가장 좋은 것)
화성시	남양 도호부		사자발쑈		감, 굴	감				
안산시	안산군		굴		사자발쑈					
안성시	안성군	대추	감							
	양성현									
평택시 진위면	진위현									
용인시	용인현									
	양지현				(토산없음)					양지면을 중심으

										로 안성시 고삼면에 걸쳐 있음
인천광역시	인천군	콩	사자발쑀, 넙치		사자발쑀	사자발쑀				
	부평도호부		사자발쑀		굴	굴				사자발쑀 (썩 좋은것)
철원군	철원도호부		당귀	송이	인삼, 송이	인삼, 송이, 오미자	당귀, 잣 두릅, 미나리		쌀	
연천군	연천현	벼, 콩	오미자		오미자					
	삭녕군				파	오미자, 파		송이		
	마전현									
장단군	장단현									
	임강현			송이						
강화군	강화도호부	감	사자발쑀						약쑀	
	교동현			굴	굴					
김포시	김포현				굴	굴			쌀	
통진군	통진현	벼, 콩	사자발쑀		굴	바다쑀				

3) 충청도

충주시에 지리적 표시가 되어 있는 품목은 밤과 사과이다. 충주목의 기록에서 밤은 여지도서의 물산에 적혀 있다. 사과는 충주목의 기록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관련 기록이 없는 항목이다. 지리적 표시제에서 사과는 충주시 외에도 충남 예산군, 전북 무주군(해발 200m 이상 지역), 경북 영주시(해발 200m 이상 지역), 경북 청송군, 경남 밀양시 산내면(얼음골사과)이 등록되어 있다.

단양군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는 품목은 마늘이다. 그러나 마늘도 전국적으로 기록이 희소한 품목이자 지리적 표시에 여러 지역이 등록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의 단양군은 단양군과 영춘현이 만나 이루어졌는데 기록상으로 두 지역에서 모두 의미 있는 품목은 대추이다. 단양군의 대추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에서 기록되었고, 영춘현의 대추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에서 기록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영춘현의 대추에 ‘가장 좋음’이라는 기록도 남아있다. 대추는 전국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품목으로 지역에 반복적으로 적힌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단양군의 경우처럼 합쳐진 행정구역에 전반적으로 기록이 있고, 품질 관련 기록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매우 희소하다. 따라서 단양군은 대추에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괴산군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는 품목은 고추, 고춧가루, 찰옥수수이다. 그러나 이 품목들은 본 논문에서 다룬 역사기록으로는 역사성을 알 수 없다. 찰옥수수는 대학찰옥수수로 불리며 품종개량을 통해 개발되어 지역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괴산군은 괴산군과 연풍현, 청안현이 통합된 것으로 세 고을 모두 공통적으로 역사성이 있는 항목은 대추라고 할 수 있다. 괴산군은 『세종실록』 「지리지」와 『대동지지』에, 연풍현은 『대동지지』에, 청안현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대추가 적혀 있기 때문이다.

천안시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호두이다. 지금의 천안시는 조선시대의 천안군, 목천현, 직산현이 통합되어 이루어졌으나, 세 고을의 지리적 내용에 호두 관련 기록이 없다. 호두는 전국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품목임에도 본 논문에서 사용한 문헌으로는 천안과 호두의 역사성을 규명할 수 없다. 천안호두의 경우, 천안의 명물인 호두과자와 철도교통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근대시기 문헌을 통한 연구가 천안호두의 지역성을 규명하는데 더 효율적일 것이다. 역사기록 상으로 천안군, 목천현, 직산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품목은 대추와 감이다. 천안군의 경우, 『대동지지』에 대추와 감이 적혀 있다. 목천현의 경우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대추, 『대동지지』에서 감이 기록되어 있다. 직산현의 대추와 감도 『세종실록』 「지리지」에 적혀 있다. 전국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품목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행정구역에 포함되는 옛 고을들이 공통분모를 가지는 의미가 있으므로 역사성을 주장할 수 있다.

영동군에는 포도와 꽃감이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다. 현재의 영동군은 영동현과 황간현이 통합된 지역이다. 포도와 관련된 기록은 없지만, 『대동지지』에서 영동현과 황간현의 감을 기록하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토산」과 『신증여지승람』에서는 두 고을에 송이를 기록하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토공」 조에도 영동현과 황간현의 대추와 호두를 기록하고 있으며 황간현의 대추는 대동지지도에 기록되어 있다.

보은군에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대추이다. 지금의 보은군은 보은현과 회인현이 통합된 것으로, 문헌 기록에 보은현과 회인현에 대추가 기록되어 있다. 보은현의 경우 『세종실록』 「지리지」, 『여지도서』, 『대동지지』에 대추가 적혀 있으며 회인현의 경우 『여지도서』와 『대동지지』에 대추가 적혀 있다. 또한 잣도 보은현과 회인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품목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에서 보은현의 잣이 기록되어 있고, 회인현의 잣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다.

공주시 정안면에는 밤이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공주목에는 밤과 관련된 기록이 없다. 공주목의 잣은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감과 대추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다.

서천군에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한산모시이다. 지금의 서천군은 한산군, 서천군, 비인현이 통합된 것이며, 세 고을에서 모시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다. 한산군과 서천군의 모시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부터 시작되어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까지 그 기록이 남아 있다. 비인현의 모시는 『세종실록』 「지리지」에만 기록되어 있다. 감도 세 고을에서 모두 기록이 남아있다. 한산군의 감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비인현의 감은 『세종실록』 「지리지」의 「토의」 조와 『대동지지』에 적혀있다. 서천군의 감은 『세종실록』 「지리지」의 「토산」 조에 적혀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서도 적혀있다.

청양군에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구기자, 고추, 고춧가루이다. 고추와 고춧가루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 논문에서 살핀 역사기록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품목이다. 또한 청양군에는 구기자 관련 기록이 없다. 지금의 청양군은 청양현과 정산현이 통합하여 만들어졌으며 동일한 품목은 모시이다. 두 고을의 콩과 감이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다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연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청양현의 모시는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적혀있으며, 정산현의 모시는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에 적혀 있다.

표 14. 충청도 지리적 표시의 역사성 비교

현재 지명	역사 지명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土産	『여지도서』		『대동지지』 土産	지리적 표시제
		土宜	土貢	土産		物産	進貢		
충주시	충주목	대추	인삼	송이	잣, 송이, 대추, 인삼	인삼, 송이, 대추, 밥 , 배, 복숭아			밥 , 사과
단양군	단양군	콩		송이	대추, 송이, 잣, 오미자, 인삼	송이, 당귀, 미나리		대추	마늘
	영춘현	대추		송이	대추, 잣, 인삼	대추, 인삼			
제천시	청풍군	콩	인삼	송이, 대추	송이, 대추, 인삼	대추, 송이			
	제천현	벼, 콩	호두		대추, 송이	송이			
괴산군	괴산군		대추, 인삼		인삼			대추	고추, 고춧가루, 찰옥수수
	연풍현	콩	인삼	송이	송이, 잣	송이, 잣		대추	
	청안현	벼, 콩	대추			인삼, 미나리			

										나지 않음
음성군	음성현		대추, 인삼		대추	대추				
청주시	청주목	대추	인삼		송이, 인삼			감, 대추		
천안시	천안군		배, 대추, 인삼					감, 대추	호두	
	목천현		배		대추			감		
	직산현	벼, 콩	대추, 감							
옥천군	옥천군		대추, 호두, 인삼		인삼	인삼		감, 대추		
	청산현		대추		잣, 인삼	대추		대추		잣, 인삼 지금은 나지 않음
청원군 문의면	문의현		대추, 인삼			대추, 밤		감		
안성군	죽산현	벼, 콩	대추, 인삼							경기 안성 군과 충북 진천군의 일부
연기군	전의현	벼	대추, 감, 호두, 인삼							
	연기현		대추, 인삼							
평택시	평택현	벼, 콩				찰벼, 콩				찰벼 搯
온양시	온수현	배	대추, 감, 인삼							

아산시	신창현					바다쪽, 감			
	아산현		쌀, 대추						
	온양현					감			
영동군	영동현	콩	대추, 호두, 인삼	송이	송이, 잣, 인삼, 오미자	당귀, 배		감	포도, 꽃감
	황간현		호두, 대추	송이	송이, 인삼			감, 잣, 대추	
보은군	회인현	콩			잣	대추		감, 대추	대추
	보은현		대추, 호두, 잣, 인삼		송이, 잣	송이, 잣, 대추		감, 대추	
진천군	진천현		대추, 인삼		인삼				
공주시	공주목		잣, 감, 대추, 호두		잣			감, 대추	밤 (정안면)
부여군	임천군	벼, 콩, 모시	대추, 잣			모시		감	
	홍산현	벼	대추, 모시			모시, 미나리, 감			
	석성현	벼, 콩	대추		모시	모시			
서천군	한산군	모시			모시, 감	모시			한산 모시

	서천군	모시		감, 굴	모시, 감, 전복, 김	모시, 감, 굴, 김				
	비인현	벼, 콩, 배, 감, 모시			전복, 꼬막, 김	전복, 김		감		
보령시	남포현	벼, 콩, 모시	잣, 감		전복, 김, 꼬막	전복, 김		감		
	보령현	밤	감, 인삼		꼬막, 굴, 전복, 김	굴		감		
청양군	정산현	벼, 콩, 배, 모시	대추, 감		모시	모시			구기자, 고추, 고춧가루	
	청양현	벼, 콩, 모시, 감			모시, 잣					
논산군	은진현		대추, 인삼		감	감				
	연산현		호두, 대추, 잣, 인삼		모시			감, 밤		모시자국은 나지 않음
	이산현		대추		모시					
대전시	회덕현		대추					감		
	진잠현									
홍성군	홍주목	벼, 콩, 밤	모시		넙치, 전복, 굴, 김	전복, 굴, 김				
	결성현				꼬막, 굴	굴, 김				
태안군	태안군	벼,		김,	김, 전복, 굴,	전복, 굴, 김		감		

		콩		전복	꼬막				
서산군	서산군	벼, 모시		굴	전복	전복, 굴, 송이, 모시		감	
당진시	면천군				모시, 굴, 전복, 김	굴		감	
	당진현			굴	꼬막, 굴			감	
강진군 성전면	해미현	모시	감	굴	굴, 넙치, 김			감	
예산군	덕산현		대추, 감					감	
	예산현		인삼					감	사과
	대흥현	콩, 배	대추						

4) 전라도

나주시에서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품목은 배이다. 지금의 나주시는 나주목과 남평현이 통합된 것이다. 나주목과 남평현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품목은 몇 가지가 있는데, 나주목의 배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토공물로 적혀 있다. 『여지도서』 「진공」에도 나주목과 남평현의 배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나주배의 역사성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나주목과 남평현에서 동일하게, 또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품목은 차이다. 나주목과 남평현 두 고을 모두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에 차의 기록이 있는데 이는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배 보다도 기록이 많은 것이다. 나주목에서 연속적으로 적혀 있는 품목은 전복, 굴, 김, 미역, 표고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서 찾을 수 있다. 남평현의 『여지도서』 「진공」 조 가운데 보리쌀이 있는 것도 특징인데, 이는 전국적으로 기록이 희소하기 때문이다.

진도군에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진도홍주, 대과, 구기자이다. 구기자는 충남 청양군과 전남 진도군이 등록되어 있으며, 진도홍주와 대과는 전국에서 진도에만 등록되어 있다. 지금의 진도군에 해당하는 해진군에서 연속적으로 적힌 품목은 전복으로, 『세종실록』 「지리지」와 『여지도서』 「물산」에 기록되어 있다.

영암군에서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된 품목은 대봉감과 무화과이다. 무화과는 기록이 없지만, 감의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대동지지』에 이르기까지 본 논문에서 비교한 지리지의 「토산」 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 밖에 영암군에서 역사성을 주장할 수 있는 품목은 전복, 유자, 굴, 차, 김, 표고이다. 전복은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에 적혀있고, 유자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 「진공」, 『대동지지』에 적혀 있다. 굴과 김, 표고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 적혀 있으며 차는 『세종실록』 「지

리지」와 『대동지지』에 적혀있다.

영광군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한우와 찰쌀보리쌀이다. 그러나 문헌 기록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영광군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품목은 차, 넙치, 감태이다. 차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넙치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 감태는 『여지도서』와 『대동지지』에 기록되어 있다.

고창군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복분자와 복분자주이다. 지금의 고창군은 무장현, 고창현, 흥덕현이 통합되어 만들어졌는데, 세 고을의 문헌기록에는 복분자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세 고을에서 동일하게 나는 품목은 차로써, 무장현의 차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한 번 적혔지만 흥덕현의 차는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에 걸쳐 연속적으로 적혀 있다. 고창현과 흥덕현에서는 감도 동일하게 적혀 있다. 고창현의 감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 흥덕현의 감은 『여지도서』와 『대동지지』에 적혀 있다.

함평군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한우이다. 그러나 문헌기록에는 한우 관련 기록이 없다. 함평군에서 연속적으로 적혀있는 품목은 모시와 차이다. 모시와 차는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에 연속적으로 적혀 있으므로 역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산」 조와 『여지도서』의 「물산」 조는 모시, 감, 차, 감태, 굴의 5가지 품목이 동일하다. 『여지도서』는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가 더욱 높으므로, 함평군의 품목들은 연속적인 역사성을 가진다.

무안군에서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품목은 양파와 백련차이다. 그러나 역사 기록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양파는 전국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이지만, 백련은 불교의 사상을 표현하는 식물이므로, 무안군 관련 읍지를 연구하여 백련 관련 기록을 찾아낸다면 역사성을 주장할 수 있다. 무안현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연속적인 품목은 굴, 김, 차 등이다. 굴과 김은 『세종실록』 「지리지」 「토산」으로 기록되었고, 『여지도서』의 「물산」에도 기록되었다. 또 감태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 「진공」 가운데 적혀 있다.

순창군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고추장이다. 그러나 역사기록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양파, 마늘, 고추, 고춧가루, 고추장은 모두 역사기록에서 찾을 수 없는 품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창고추장은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으므로 지역적 차원에서 역사성과 전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읍지를 통한 관련 연구 성과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특히 발효식품인 장류는 자연, 장인, 용기와 같은 여러 요소가 포함되면서 지리적 표시의 의미를 잘 표현하는 품목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구례군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산수유이다. 그러나 구례현의 기록 가운데 산수유에 대한 내용은 없다. 구례현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품목은 대추, 감, 잣, 호두, 송이, 표고이다.

광양시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매실과 백운산 고로쇠 수액이다. 광양현의 기록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매실은 전국적으로 희소하게나마 기록된 품목이지만 광양현에는 적혀 있지 않다. 고로쇠 수액은 무주군과 광양시 두 곳이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는데 지역범위가 넓고, 전통적으로 그 효능을 인정받아 왔으므로 읍지(邑誌)를 통한 연구에서 성과를 가질 수 있다.

장흥군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김, 키조개, 매생이, 표고이다. 장흥도호부에서 키조개를 제외하고는, 『세종실록』 「지리지」부터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의 경우 전라남도에 심한 편재를 보인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었으나, 장흥군은 역사적으로 김, 매생이, 표고버섯에 대하여 전통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성군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녹차, 삼베, 꼬막(벌교), 웅치올벼쌀³⁸⁾이다. 보성녹차(우전, 곡우, 세작)는 지자체에서 알리기에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기록된 역사성 있는 차'로 소개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세종실록』 「지리지」 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차가 기록된 지역은 매우 많다. 또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부터 『대동지지』에 이르기까지 거듭, 연속적으로 기록된 지역도 매우 많다. 그렇다면 보성녹차가 지리적 표시 제 1호로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본 논문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특별한 역사성은 가지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보성녹차는 분명 '어디에나 있는(in anywhere, ubiquitous)' 차가 아니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기존과 같이 역사 기록에 적혀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더 이상 역사성을 주장할 수 없다. 보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품목인 삼베나 웅치올벼쌀은, 역사기록에서 전국적으로 찾을 수 없는 품목이다. 그러나 강요주(江瑤柱, 꼬막)는 전국적으로 기록된 품목이지만 보성군에서는 관련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역사성을 확인할 수 없다.

고흥군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유자이다. 고흥현에서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여지도서』 「물산」에 유자가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 「물산」에 강요주(江瑤柱, 꼬막)도 기록되어 있다. 표고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여지도서』에 연속적으로 적혀 있다.

무주군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사과, 머루, 머루와인이다. 머루와 머루와인은 다루어지지 않은 품목으로 유사한 품목인 다래는 강원도에서 주로 기록되었다. 사과도 전국적으로 기록이 없는 품목이므로 역사성을 밝힐 수 없다. 무주현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품목은 오미자, 당귀, 잣이다. 『여지도서』 「진공」에 대맥미(大麥米, 보리쌀)이 기록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녹차와 돼지이다. 지금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목과 정의현, 대정현이 통합된 것이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희소한 소, 돼지의 기록이 있다. 『여지도서』 「물산」에서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소와 돼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의현과 대정현의 「진공」 조에

38) 웅치올벼쌀은 보성군 웅치면에서 생산되므로 웅치는 지명이다.

는 흑우가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 목장 수나 규모, 위치에 대한 기록이 있어 의미가 깊다. 양은 지리적 표시 품목이 아니지만 양을 길렀다는 기록도 있다. 또 바쳐야 하는 소는 흑우인데 흑우가 많지 않아, 민가에서 흑우를 먼저 골라 바치고 대신 나라의 소를 주었다는 기록도 있어 때마다 진공 품목과 수량을 맞추는 과정의 어려움도 엿볼 수 있다.

표 15. 전라도 지리적 표시의 역사성 비교

현재 지명	역사 지명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土産	『여지도서』		『대동지지』 土産	지리적 표시제	비 고
		土宜	土貢	土産		物産	進貢			
전라도	전라도	(賦稅) 벼, 콩, 모시	(공물) 돼지, 굴, 밤, 대추, 꽃감, 배, 유자, 김, 매산, 감태, 송이, 작설차, 모시, 인삼, 말린 죽순, 당귀, 호두, 멧미나리, 배, 두릅뿌리, 잣							
전주시	전주부	감, 배	모시, 대추, 인삼				감			
금산군	진산군		대추		인삼, 송이		감			
	금산군		대추		잣, 송이	(물산없음)				
익산시	익산군		대추, 모시			건시, 쌀, 배, 포	밤		삼률	
	함열현	모시			모시		쌀, 배			
	용안현	모시					쌀, 배			
	여산현	밤	모시							
정읍시	고부군		대추,							

			죽순, 작설차						
	정읍현		대추, 감, 차, 죽순		모시, 감	모시, 감			
	태인현	모시	대추, 감, 인삼, 죽순		감, 차, 모시	감	꽃감, 배, 보리쌀		
김제시	김제군		죽순, 모시		모시				
	금구현	모시, 배	감		모시	모시			
군산시	만경현	모시							
	임피현		모시, 대추		모시				
	옥구현	밤, 차	모시, 대추		굴, 차	굴	꽃감, 밤,	모시	
부안군	부안현	모시		굴, 송이, 모시	굴	감태, 배, 다시마, 쌀	감, 잣, 호두		
완주군 고산면	고산현		대추, 감, 인삼, 당귀		송이, 감, 모시	감	배, 꽃감, 돼지		
나주시	나주목		작설다, 감, 배, 죽순, 대추		전복, 굴, 김, 표고, 감태, 미역, 차, 매산	전복, 굴, 김, 표고, 감태, 미역, 차, 매산	꽃감, 배	모시, 감	배

	남평현		작설차		차, 매실	매실	꽃감, 배 , 호두, 죽순, 보리쌀, 작설차	감		차 지금은 나지 않음
진도군	해진군	모시	전복, 인삼			유자, 굴, 전복, 매산, 미역, 김, 감, 배	표고		홍주, 대파, 구기자	홍합(토공)
영암군	영암군	감	전복, 죽순, 작설차	김	감 , 유자, 굴, 전복, 감태, 김, 매산, 미역, 표고	감 , 굴, 전복, 김, 매산, 미역	표고, 유자, 다시마	감 , 차, 유자	대봉감 , 무화과	김(甘苔)
영광군	영광군	모시	대추, 작설차		넙치, 굴, 차	넙치, 굴, 감태	전복, 쌀, 배	김, 감태	한우, 찰쌀 보리쌀	차 지금은 나지 않음
강진군	강진현		작설차, 전복, 인삼		인삼, 유자, 송이, 표고, 차, 감태, 김, 매산, 전복, 굴, 미역	유자, 송이, 표고, 김, 매산, 작설차	전복, 미역, 다시마			인삼 지금은 나지 않음
고창군	무장현				넙치, 차		다시마, 배, 꽃감, 쌀			
	고창현		대추, 죽순 작설차		감, 차	감	꽃감, 배, 보리쌀		북분자, 북분지주	차 지금은 나지 않음
	홍덕현	밤	작설차		차	차	보리쌀, 배, 꽃감, 쌀	감		
함평군	함평현	모시	작설차, 죽순		모시, 감, 차, 감태, 굴	모시, 감, 차, 감태,	쌀	한우		

						굴			
무안군	무안현		작설차, 죽순	김, 굴	감태, 차	굴, 김, 차	쌀, 꽃감, 감태	감	양파, 백련차
장성군	장성현	모시	작설차, 죽순		모시, 감	모시, 매실	돼지, 감, 죽순, 배, 쌀	차, 매실	
	진원현	모시	죽순, 차		(진안현) 송이		(진안현) 모시, 감		
남원시	남원 도호부	감	대추, 감, 배, 당귀, 인삼		오미자, 감, 표고, 송이, 잣, 호두	호두, 감	작설차, 배, 잣 돼지, 꽃감	밤, 차	
	운봉현			송이	오미자, 감, 인삼, 잣, 송이	감, 밤, 오미자	돼지, 배, 꽃감, 잣, 호두, 쌀	밤	
순창군	순창군		대추, 감, 배, 차			차	작설차, 죽순, 배, 꽃감, 잣, 돼지, 쌀, 호두, 대추		고추장
구례군	구례현		대추, 감, 배, 호두, 작설차		송이, 감, 잣, 표고, 호두, 오미자	잣, 송이, 표고	돼지, 꽃감, 대추, 호두		산수유
임실군	임실현		배, 인삼		모시	감, 배, 호두, 밤		감, 배, 밤, 호두	
장수군	장수현		대추, 감, 배, 인삼		오미자, 인삼, 감	오미자, 미나리	꽃감, 잣, 호두, 배, 대추, 돼지		

무주군	무주현	감, 호두	대추, 당귀		송이, 인삼, 잣, 오미자	인삼, 오미자, 당귀, 황기	돼지, 잣, 꽃감, 보리쌀		사과, 머루, 머루와인	보리쌀 (대맥미)
곡성군	곡성현		감, 배		감, 송이	감, 작설차	죽순, 배, 꽃감			
	옥과현				감, 송이	감, 송이	죽순, 쌀, 꽃감			
광양시	광양현		대추, 감, 배, 미역		전복, 미역, 김, 표고, 차, 송이, 감, 유자	표고, 송이, 감, 굴, 감태	전복, 김, 미역, 유자, 다시마, 석류	차	매실, 백운산 고로쇠 수액	
장흥군	장흥도호부	밤	밀린죽순, 표고, 배, 유자, 전복, 당귀	깎, 송이	유자, 전복, 굴, 표고, 송이, 감태, 김, 매산, 미역	유자, 굴, 전복, 표고, 미역, 김, 감태, 매산		차	김, 키조개, 매생이, 표고	건합(토공) 홍합(동람)
담양군	담양도호부	모시	차, 배, 감, 대추		호두, 감, 차, 매실, 모시	호두, 감, 차, 매실, 모시	꽃감, 쌀, 죽순, 배, 작설차, 호두			(여지) ⁴⁰⁾
	창평현		대추, 감, 생모시		감, 대추	감, 대추	작설, 쌀, 죽순, 배, 꽃감			
순천시	순천도호부	밤	대추, 감, 배, 죽순, 전복, 표고, 인삼		전복, 굴, 김, 미역, 모시, 유자, 매실, 표고, 송이, 차		전복, 돼지, 유자, 미역, 김	유자, 매실		

	낙안군		표고, 차, 유자		굴, 표고, 송이, 유자, 감, 차	굴, 유자, 감, 호두, 차	김, 전복, 다시마, 표고	유자, 매실, 호두	
광주시	무진군		감, 배, 차, 표고						
	광주목					감, 대추, 차, 호두, 매실, 밤	꽃감, 배, 호두, 쌀, 죽순, 작설, 보리쌀, 돼지		
보성군	보성군	모시	죽순, 표고, 차		감, 매산, 차 , 모시, 유자, 굴, 표고, 송이, 미역, 전복, 김	미역, 김, 전복	유자, 표고		녹차 , 삼베, 꼬막 (별교), 웅치 올벼쌀
고흥군	고흥현	배, 감, 밤	표고, 차			굴, 전복, 유자, 표고, 김, 미역, 매산			유자
화순군	능성현	모시		송이, 표고	감, 차, 송이, 표고	(능주목) 감, 차, 송이	꽃감, 배, 호두, 쌀, 죽순, 작설, 보리쌀		
	화순현	감	대추, 표고		감, 차, 송이	감, 차	꽃감, 쌀, 대추, 죽순		
	동북현		차,		감, 차, 표고	감, 대추,	죽순, 쌀,	밤,	

			표고, 인삼, 당귀, 두릅			차, 호두, 배, 밤	꽃감	호두		
해남군	해남현					모시, 차, 유자, 김, 미역, 감, 매산, 굴,	전복, 다시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목	콩	표고, 유자, 전복		콩, 전복, 미역, 표고	콩, 소 ⁴¹⁾ , 돼지, 감, 전복, 미역, 유자, 오미자			녹차, 돼지	목양(牧養) 우둔(牛頓) ⁴²⁾ 저권(猪圈)
	정의현	콩	미역, 다시마		제주와 같음	콩, 밤, 소, 돼지, 미역, 전복, 유자, 오미자	흑우			목장에 흑우 기록
	대정현		전복, 표고, 미역, 다시마			벼, 콩, 소, 돼지, 밤, 전복, 미역, 유자, 오미자	흑우			果園 5곳 牧場 3곳

40) 변주승 외, 2009, (국역)여지도서, 전주대학교, 디자인흐름. 전라도 보유 II. 담양부읍지, 동치(同治) 10년(1871, 고종8) 10월.

41) “검은 소, 황소, 얼룩소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뿔이 매우 아름다워 뿔잔을 만들 만하다. 집집마다 말과 소를 길러 수백 마리의 무리를 이룬다.”고 적혀 있다. 전라도 보유 I. p.193.

42) “국영 목장에 있는 소 가운데 순흑색은 적고 잡색은 많다. ...(중략)... 해마다 진상품을 바치면서 소도 합쳐 보내는데, 늘 부족할까 염려하여 어쩔 수 없이 민가에서 검은 소를 골라 먼저 바치고 그 대신 잡색의 소를 주었다”고 적혀 있다. 전라도 보유 I. p.210.

5) 경상도

경산시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 품목은 대추이다. 지금의 경산시는 경산현, 하양현, 자인현이 통합된 지역이다. 경산현과 하양현에서는 대추의 기록이 동일하고 연속적으로 나타나지만, 자인현에는 관련 기록이 없다. 경산현과 하양현의 대추는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에 언급되었으며,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하양현의 대추에 대해 ‘여러 고을에서 제일’이라는 품질관련 기록까지 남아 있다. ‘여러 고을에서 제일’이라는 품질보증 기록도 하양현의 대추에는 적혀 있고 경산현의 대추에는 없으므로, 경산현도 역사성을 공유하는 이익을 본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영천시에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포도이다. 현재의 영천시는 영천군과 신녕현이 통합된 것으로, 영천군에도 신녕현에도 포도 관련 기록은 없다. 포도도 사과나 수박처럼 기록되지 않은 품목이다. 영천군에서 연속적으로 적혀 있는 품목은 송이로, 『세종실록』 「지리지」 「토산」과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물산」에 적혀있다. 신녕현의 송이도 『세종실록』 「지리지」 「토산」에 적혀 있다. 산수유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 「물산」에서 적고 있으며, 『여지도서』 「진공」에 황기도 포함되어 있다.

부산시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기장군의 미역과 다시마이다. 기장현의 미역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 적혀 있고, 다시마는 기록이 없다. 동래현의 기록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다시마가 적혀 있고, 미역도 『세종실록』 「지리지」부터 적혀 있다. 동래현과 기장현의 역사성을 비교하면 기장현보다 동래현이 더 오랜 역사를 가진 셈이다. 그 외에 동래현의 전복, 굴, 유자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여지도서』에 ‘왜헌진상’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왜가 바치는 진상 품목을 알 수 있다. 그 품목은 후추, 백반, 다목 등으로 지리적 표시 품목과는 겹치지 않지만 『여지도서』의 지리지적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창녕군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양파와 마늘이다. 지금의 창녕군은 창녕현과 영산현이 통합된 것이다. 창녕현과 영산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품목은 배, 대추, 호두이다. 창녕현에서 연속적으로 기록된 품목은 오미자, 영산현에서 연속적으로 기록된 품목은 매실과 감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듯 양파와 마늘의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지금의 울주군 언양면에 해당하는 언양현의 기록에는 참외가 적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 기록되어 있다. 참외로 등록된 지역은 경상북도 성주군이다.

안동시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안동)포지만 안동대도호부의 기록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안동대도호부에서 연속적으로 기록된 품목은 송이, 인삼, 잣이다.

영주시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사과이다. 지금의 영주시는 순흥도호부 일부⁴³⁾, 풍기군, 기천현이 통합된 것이다. 세 고을에서 동일하게 기록된 품목은 송이와 인삼이며, 연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영천시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포도이다. 지금의 영천시는 영천군과 신녕현이 통합된 것이다. 두 고을에서 동일하게 기록된 품목은 콩, 송이, 인삼이다. 영천군에서 연속적으로 기록된 품목은 산수유, 잣이다. 포도는 전국적으로 관련 기록이 없어 역사성을 밝힐 수 없으므로, 다른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후행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청송군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사과이다. 지금의 청송군은 청송군과 진보현이 통합된 것이다. 두 고을에서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기록된 품목은 송이, 인삼이다. 『대동지지』에 진보현의 미나리와 당귀가 기록되어 있다.

의성군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마늘이다. 지금의 의성군은 의성현과 비안현이 통합된 것이다. 두 고을에서 동일하게 기록된 품목은 인삼인데, 『여지도서』 「물산」에서 두 고을의 인삼이 지금은 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43) 순흥도호부는 행정통합으로 현재의 영주시와 봉화군에 걸쳐 있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도서』 「진공」에서 두 고을의 인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 진공품을 힘들게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상주시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꽃감이다. 지금의 상주시는 상주목과 함창현이 통합된 것이다. 두 고을에서 동일하게 기록된 품목은 감, 송이, 호두, 밤, 미나리로, 두 고을은 품목의 유사성과 연속성이 높다. 두 고을의 감이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지리적 표시 품목과도 일치하는 점에서 상주꽃감의 역사성을 주장할 수 있다.

성주군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참외이다. 사과, 딸기 등의 과일은 기록이 없는 데 비해, 참외는 희소하지만 기록이 남아있는 품목이다. 그러나 성주목의 기록에는 참외가 없다. 성주목에서 연속적으로 기록된 품목은 송이와 잣이다.

고령군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수박이다. 고령현에서 연속적으로 기록된 품목은 감, 매실이다. 그 외에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황기, 구기자도 기록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희소한 마늘이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고을과 달리 역사성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세종실록』 「지리지」에만 기록되어 있어 연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김천시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자두, 포도이다. 지금의 김천시는 개령현과 지례현이 통합된 것으로, 두 고을에서 동일하게 기록된 품목은 호두와 감이다. 자두와 포도는 수박, 사과, 딸기 등 과일과 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개령현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품목은 대추이고, 지례현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품목은 송이와 잣이다.

문경군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오미자이다. 오미자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품목이지만 문경현의 기록에는 적혀 있지 않다. 문경현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품목은 송이와 잣이다.

함안군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수박이다. 지금의 함안군은 함안군과 칠원현이 통합된 것으로, 다른 고을과 같이 두 고을에서도 수박 관련 기록

은 없다. 두 고을에서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품목은 감이다. 함안군에서는 대추, 표고, 모시, 밤 등도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함양군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꽃감이다. 지금의 함양군은 함양군과 안음현이 통합된 것으로, 두 고을에서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감이 기록되어 있다. 대동지지에는 감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의 「물산」과 「진공」에 모두 감과 꽃감이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함양군 기록에는 감이 「토의」조와 「토산」조에 2번 언급되어 있어 품질이 좋았음을 알 수 있다.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미자도 두 고을에서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 함양군에서는 잣이 연속적으로, 안음현에서는 호두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동군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녹차와 악양대봉감(악양면을 대상으로 함)이다. 지금의 하동군은 곤남군과 하동현이 통합된 것으로, 두 고을에서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감과 차가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도 유자, 굴, 김, 미역, 전복, 송이 등이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통합된 지역 가운데 역사적 기록의 일치하는 정도가 크므로, 하동군은 새로운 지리적 표시 등록 시 역사성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고, 지역축제와 같이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지고 있어 긍정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거제시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거제맹종죽순(하청면을 대상으로 함)이다. 죽순은 기록된 지역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거제현의 기록에 죽순은 적혀 있지 않다. 그러나 『대동지지』에서 대(竹)라는 기록이 있어 19세기 중엽부터 대나무가 길러졌음을 알 수 있다. 또 『대동지지』 「목장」에 소를 기른다는 기록⁴⁴⁾이 있다. 그 외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품목은 전복, 미

44) 가조도(可助島)·칠천도(漆川島) **소를 기른다**. 산달도(山達島)·구천동(九川洞) 가라산 동쪽이다. 탑포(塔浦)·구영등(舊永登)·장목포(長木浦)·구조라포(舊助羅浦)·지세포(地世浦)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www.koreanhistory.or.kr

역, 유자, 표고이다.

의령군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의령)망개떡이다. 망개떡은 의령군에서 전통성을 가진 품목이지만, 강릉한과와 같이 그 역사성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후 다른 문헌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의령현의 기록 가운데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품목은 모시, 감, 매실이다.

표 16. 경상도 지리적 표시의 역사성 비교

현재 지명	역사 지명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土産	『여지도서』		『대동지지』 土産	지리적 표시제
		土宜	土貢	土産		物産	進貢		
경주시	경주부		잣, 호두, 산수유		전복, 넙치, 김, 미역			감	
밀양시	밀양도호부		작설차, 당귀, 황기		송이, 밤, 차	차, 송이, 밤 ⁴⁵⁾		죽순, 인삼	
양산시	양산군		송이, 배		송이, 표고, 차	(토산)	인삼, 당귀		
울산시	울산군	벼	작설차, 미역, 김		모시, 차, 넙치, 전복, 굴, 표고, 김, 미역	(토산) 모시, 작설차, 넙치, 전복, 굴, 표고, 김, 미역	인삼, 미나리		
청도군	청도군	벼	호두, 황기		송이, 감, 밤	송이, 감, 밤, 호두	인삼, 죽순, 미나리,	잣, 호두	
포항시	홍해군		미역		전복, 넙치, 김, 미역, 송이	(토산) 전복, 넙치, 김, 미역	인삼, 미나리		
	장기현		송이, 김, 미역		전복, 미역, 김, 송이	넙치, 전복, 미역, 김, 송이	인삼		
	청하현		미역		전복, 김,	전복, 김,	인삼		

					미역, 넙치	미역, 넙치				
대구시	대구군	벼	호두, 대추, 잣		송이, 인삼, 잣, 감, 구기자	감, 잣, 송이, 호두, 구기자	미나리, 인삼			인삼 지금은 나지 않음
	현풍현	벼	배, 호두, 황기				인삼, 죽순			
경산시	경산현	벼	호두, 대추		대추 , 매실	대추	인삼, 미나리		대추	매실 지금은 나지 않음
	하양현	벼	호두, 대추		대추	대추		인삼, 미나리		(세지) 대추 여러 고을 에서 제일
	자인현					구기자	인삼			역사지명 (여지기준)
부산시	동래현	벼	미역, 김		전복, 굴, 김, 미역, 다시마, 유자, 표고, 넙치	전복, 굴, 김, 미역, 유자	인삼, 전복	유자		다시마, 표고 지금은 나지 않음 왜헌진상 [왜가 바 치는 진상 물품] 후추, 백반, 다목
	기장현	벼, 콩	김		넙치, 전복, 김, 미역 , 감, 유자, (가을포)	넙치, 전복, 김, 미역 , 감, 유자	인삼		미역 , 다시마	(토공) 건합 (동랍) 홍합
창녕군	창녕현	벼	배, 대추,		오미자	오미자	인삼, 죽순		양파, 마늘	

			호두						
	영산현	벼	호두, 배, 대추		매실, 감	매실, 감	인삼, 구기자, 미나리, 죽순		
울주군 언양면	언양현	벼, 콩	인삼, 죽순		표고, 송이, 참외	표고, 송이, 참외, 당귀	인삼, 미나리		
영일군	영일현		송이, 죽순, 미역, 김		송이, 전복, 김, 넙치, 미역	송이, 전복, 김, 넙치, 미역	미나리		
영양군	영양현					송이, 당귀, 오미자	인삼, 미나리, 구기자		
안동시	안동대 도호부	벼, 콩	송이, 잣, 인삼		인삼, 잣, 송이			감	포
영덕군	영덕현	벼, 콩	미역, 인삼	김, 송이	전복, 미역, 잣, 김, 넙치, 인삼	전복, 미역, 김	인삼, 미나리, 넙치	잣	
	영해 도호부	벼, 콩	인삼, 송이, 김, 미역		인삼, 넙치, 송이, 김, 미역	넙치, 전복, 김, 미역	인삼, 구기자	감	
영주시	순흥 도호부	벼, 콩	송이, 잣, 인삼			잣, 송이, 인삼			사과
	풍기군					잣, 송이,	인삼,		

						인삼	당귀			
	기천현	벼, 콩	배, 송이, 인삼							
예천군	예천군	벼, 콩	호두, 송이		송이, 인삼, 잣	송이, 인삼, 오미자	우슬, 구기자, 미나리, 돼지			잣 지금은 나지 않음
	예안현	벼, 콩	잣, 배, 송이, 인삼		송이, 인삼, 잣, 오미자	송이, 인삼, 잣, 오미자		당귀, 미나리		
	용궁현	벼, 콩			배, 잣	배, 잣	인삼, 구기자	감		
영천시	영천군	벼, 콩	인삼	송이	송이, 인삼, 산수유, 잣	(토산) 송이, 인삼, 산수유	황기, 잣, 미나리		포도	
	신녕현	벼, 콩		송이		인삼, 미나리				
청송군	청송군		송이, 배, 잣, 인삼		송이, 인삼, 잣	인삼			사과	잣, 송이 지금은 나지 않음
	진보현	벼, 콩	송이		송이, 인삼	송이, 인삼		미나리, 당귀		
의성군	의성현	벼, 콩	송이, 인삼		송이, 인삼		돼지, 인삼, 미나리, 오미자,		마늘	송이, 인삼 지금은 나지 않음

							당귀		
	비안현		당귀		인삼		우슬, 미나리		
구미시	선산 도호부	벼	대추, 호두		잣, 밤, 감	잣, 밤, 감	인삼, 구기자, 미나리, 밤, 호두		
	인동현	벼, 콩	호두		호두, 감	호두, 감	인삼, 구기자, 미나리		
봉화군	봉화현	벼	잣	송이	송이, 인삼, 잣	잣, 인삼, 송이	미 나 리, 당귀, 말린 칩		
군위군	군위현	벼, 콩	당귀	송이	송이	송이	인삼, 미나리		
	의흥현	벼, 콩, 대추	당귀		송이, 인삼	미나리	인삼, 오미자		
상주시	상주목	벼, 배		송이	송이, 호두, 감, 밤, 인삼	감, 밤, 송이, 인삼	호두, 밤, 미나리	송이	꽃감
	함창현	벼		송이	송이	송이, 감, 호두	인삼, 미나리, 구기자	감, 호두	
성주군	성주목	벼	배, 잣, 대추	송이	송이, 잣	송이	인삼, 꽃감	감	참외
칠곡군	칠곡 도호부					미나리, 황기, 약쑥	인삼, 구기자		

합천군	합천군	벼, 감	잣	송이	감, 송이, 잣, 인삼, 오미자	감, 송이, 잣, 인삼, 오미자	구기자, 미나리, 꽃감			
	초계군	벼			감, 호두, 잣	감, 호두, 잣	인삼, 미나리, 꽃감, 반시			(진공) 반시 :납작감
	삼가현	벼	감, 송이		감, 오미자	(토산) 감	미나리, 구기자, 인삼, 죽순, 꽃감			오미자, 당귀 지금은 나지 않음
금산군	금산군	벼	당귀	송이	송이	송이	인삼, 구기자, 미나리	감		(동람) 김산
고령군	고령현	벼, 마늘		황기	감, 매실	감, 매실	구기자, 인삼, 꽃감		수박	마늘
김천시	개령현	벼	호두		대추	대추	인삼, 구기자, 미나리, 호두	감, 밤	자두, 포도	
	지례현	벼, 배	호두	송이	송이, 잣	송이, 잣	인삼, 당귀, 오미자, 미나리	감		
문경군	문경현	벼, 콩, 밥,	당귀, 인삼	송이	송이, 잣	송이, 잣, 인삼	미나리	감	오미자	

진주시	진주목	감, 배	송이, 작설다	미역	감, 차, 미역, 잣, 전복, 송이, 매실, 오미자			오미자, 김	
김해시	김해 도호부	벼, 콩	미역		미역, 전복, 굴, 표고	미역, 전복, 표고	인삼	감, 김	
창원시	창원 도호부	벼, 콩	죽순	미역, 굴	굴, 유자, 감	굴, 감	인삼, 미나리, 전복	밤	
함안군	함안군	벼, 배, 대추			표고, 모시, 감, 대추	표고, 모시, 감, 대추, 밤	미나리, 인삼, 구기자, 죽순, 꽃감	밤, 대추	수박
	칠원현	벼	미역	감	인삼, 감	감			
함양군	함양군	벼, 콩, 감		작설다, 감, 죽순	감, 잣, 오미자	감, 잣, 오미자	꽃감, 인삼, 미나리, 오미자, 구기자		꽃감
	안음현	벼, 감			호두, 당귀, 오미자, 감	(안의현)(토산) 호두, 감, 오미자	꽃감, 건삼, 미나리, 구기자	호두	

하동군	곤남군	벼, 콩, 갯 , 송이		미역	(곤양군) 굴, 전복, 김, 갯 , 유자, 표고, 차	(곤양군) 굴, 전복, 미역, 김, 갯 , 유자, 차 , 송이, 표고	인삼, 작설 , 죽순, 김	(곤양군) (홍합)	녹차, 대봉갯 (악양면)	(토공) 홍합
	하동현	벼	갯	작설 미역	전복, 굴, 차 , 유자, 갯 , 미역	굴, 차 , 유자, 갯 ,	인삼, 김, 미나리, 오미자, 전복	김		(토공) 건합 (물산) 전복, 미역 지금은 나지 않음
고성군	고성현	벼, 콩	작설, 송이, 미역		전복, 굴, 감, 미역, 송이, 유자, 표고, 차	전복, 굴, 미역, 송이, 유자, 표고, 차, 감,	인삼, 작설, 김	김		固城縣 (토공) 건합 (동랍) 홍합
거제시	거제현	벼		미역	전복, 미역, 유자, 표고	전복, 미역, 유자, 표고	김	김, 대(竹) (목장 :소)	거제 맹종 죽순 (하청면)	(토공) 건합
거창군	거창현	벼, 감, 대추, 배	호두		오미자, 감, 밤, 송이, 잣	오미자, 감, 밤, 송이, 잣, 당귀	인삼, 구기자, 미나리, 꽃감	호두		
산청군	진성현	벼, 감								
	산음현	벼	작설, 감, 송이, 당귀, 인삼, 오미자		차, 감, 송이, 오미자, 당귀	(토산) 차, 감, 당귀 오미자	인삼, 구기자, 미나리, 꽃감			송이 지금은 나지 않음

의령군	의령현	벼, 모시, 감, 배	인삼		매실, 모시, 감	(토산) 매실, 모시, 감	인삼, 구기자, 죽순		망개떡
진해시	진해현	벼	작설다		유자, 표고, 차, 전복, 굴	차, 전복			
	웅천현					전복, 굴, 미역	인삼		

45) 읍내 앞 교외에 몇 리에 걸쳐 가득 찬 밤나무 숲이 있는데, 해마다 수확이 매우 많고 그 품질 또한 좋아서 세상에서는 ‘밀양 밤’, 곧 ‘밀울(密栗)’이라고 부른다. 변주승 외, 2009, (국역)여지도서, 경상도 5, 전주대학교, 디자인흐름, p.199.

조선시대 지리지를 통해 살펴 본, 지리적 표시 대상 품목의 전통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 가운데 사과·수박·포도·딸기와 같은 과일, 양파·마늘·고추·고춧가루와 같은 양념류는 지리지 토산에 기록되지 않아 연구 되지 못했다. 또한 약재, 도기, 자기, 각종 수산물과 같이 지리지 토산에 많은 품목은 지리적 표시의 등록대상임에도 등록된 지역이 없다. 앞으로 지리적 표시제가 더욱 발전하며 내실과 외실이 모두 확대되면 등록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지리지 토산과 지리적 표시의 큰 차이점은 지역별 품목 수가 다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리적 표시는 한 두 가지 등록된 경우가 보통인데 토산에 기록된 품목은 고을마다 농축임수산물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어, 특산물보다는 생산품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 지리지에서 중복되는 품목이 매우 많아서 송이, 감(곶감과 대봉감)과 같은 품목은 오랜 역사를 가진 고을이 여럿이라, 의미있게 다루는 범위를 선정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리지에 나오는 고유한 품목들, 예를 들어 도(捺, 찰벼), 독활(獨活, 멧두릅), 시호(柴胡, 멧미나리), 미후도(彌猴桃, 다래), 납저(臘猪, 돼지), 우슬(牛膝, 소무릎), 강요주(江瑤珠, 꼬막)와 같은 기록을 현재의 지리적 표시 품목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역사지리적 방법으로 지리지를 연구했기에 가능한 결과이다.

IV. 지리적 표시제의 활성화 방안

1. 효과와 문제점

지리적 표시제는 주원료가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진다. 상주곶감의 경우 과거 연간 매출액 1,200억 원 가운데, 600억 원 정도만 상주시에서 생산되었고 나머지 600억 원의 곶감은 상주에서 생산되지 않았다. 지리적 표시제의 도입을 통해 과거의 ‘상주곶감’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 문제를 해결하고, 상주동시와 상주곶감의 수요를 늘렸으며 품질관리까지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⁴⁶⁾.

또한 지역특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리적 표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유명한 지역특산품도 여러 생산업체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했으며, 품질·가격·포장·상표에 관한 기준이 없었다. 지리적 표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특산품 생산자들을 법인의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제품생산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는 상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상품의 홍보 및 가격을 차별화하고 상품포장재의 위생과 디자인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특산품의 품질과 상품가치가 향상되었다⁴⁷⁾. 그 예로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임산물 지리적 표시품 생산자 단체에 디자인 개발 사업비를 매년 지원해오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는 인증획득, 브랜드화, 문화상품화 등 효과를 가지고 있다.

46) 전현진, 이주현, 2010, “지리적 표시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19(1), pp. 141~163.

47) 조정은, 2008,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생산자,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농산물 및 가공품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식품가공학 외식산업학전공 석사학위논문.

그 외에도 상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직거래가 늘어나며 유통구조가 어느 정도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농산물의 유통구조는 전체적으로 왜곡된 틀을 가지고 있다. 단양마늘 사례를 보면, 생산량의 약 50% 이상이 중간상인들에게 판매되며, 농협·마늘전문 생산자 단체에 의한 유통은 약 10% 정도에 그치고 있어, 품질관리나 가격의 주도권을 단양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판로개척 등 어려움 때문에 생산자들이 직거래를 포기, ‘밭떼기’라는 포전매매를 선택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진도대파’의 경우도 판매량의 약 90% 이상이 포전매매에 의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⁸⁾. 이와 반대로 밀양얼음골사과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비중이 67%이다. 생산자 단체의 이사회에서 사과 포장재 1개 당 100원 정도의 발전기금을 생산자로부터 받아 적립하고 이를 품질관리나 축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⁴⁹⁾. 지리적 표시 등록에 따른 ‘명칭의 권리화’를 통해 생산자 단체가 생산자들을 품질관리 및 판매가격 등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이다.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활성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에는 ‘지재(地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 농·특산품의 생산원료까지 그 지역에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재의 개념이 중요한 것은 단순 원료농산물 형태에서 ‘농식품’ 형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김치의 원료 생산지 문제, 배추·고춧가루·마늘·젓갈 등 원료의 산지도 매우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다⁵⁰⁾. ‘인제 내린천 두부’가 유명해지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면서 판매량이 증가할 때, 수입산이나 타 지역산 콩을 구입

48) 전현진, 이주현, 2010, “지리적 표시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19(1), pp. 141~163.

49) 김원오 외, 2011, “국내 지리적 표시제도의 통합화 방안 연구”, 사단법인 대한상표협회, p.307.

50) 허순희, 2005, “지적재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p.114.

해 조달한다면, 인제 내린천 두부의 명성에서 오는 부가가치가 인제 지역에서 콩을 생산하는 지역민에게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과 같다.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 특산품의 명성에서 오는 이익을 지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최근 국내 소비자들은 단순히 품질·안전성 등의 질적 요인뿐만 아니라, 생산 지역의 자연 환경적 요소와 유래·이야기 등을 포함한 역사·문화적 요인까지 고려한 종합적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법인은 지역특산품을 상품 품질과 아울러 생산지를 마케팅 장소로 활용하고, 역사적 기원과 유래를 통해 역사·문화적 요소까지 포함한 종합적 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지리적 표시제가 가지는 이상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표시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법인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적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생산자들이 모인 단체이어야 하고, 둘째 개인 기업이 아니라 법인이어야 하며, 셋째 해당품목 생산자들에 대한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지역 안에서 지리적 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생산자가 원료생산과 아울러 가공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지역특산품의 경우 ‘농업인’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어렵다⁵¹⁾.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과 제3항에도 ‘지리적 표시의 등록신청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할 수 있다’로 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 표시 등록법인과 마찬가지로 등록명칭의 지명에 한정되는 지역 내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생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의 정관에 특정한 자격

51) 전현진, 이주헌, 2010, “지리적 표시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19(1), pp. 141~163.

이나 신분을 조합원 가입조건에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⁵²⁾.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수산물지리적표시제도 관심과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서양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수산물이 다양한 형태로 식품에 이용되어 왔다. 수산물 이용의 역사도 상대적으로 길어서 유서 깊은 수산특산품 숫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지리적 표시제의 도입과 명품화·차별화 움직임이 더뎠다. 농산품의 경우 1999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02년 최초 등록된 데 비해, 수산물은 1999년에 시행근거는 농산물과 함께 마련되었음에도 10년 동안이나 시행을 못하다가 2009년 2월에야 최초 등록하게 되었다.

II-1과 같이 지리적 표시제의 목적은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 향상, 지역 경쟁력 강화,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관리가 농산물품질관리원, 산림청, 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다 보니 지리적 표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일관성·효율성 측면에서 미약한 바가 있다. 더불어 <표 3>과 같이 지리적 표시제의 5가지 심사기준 가운데 역사성, 지역성, 지리적 특성의 3가지에 해당하는 전통·문화적 성격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52) 전현진, 이주헌, 2010, “지리적 표시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19(1), pp. 141~163.

2. 활성화 방안

1) 등록법인의 육성지원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인식제고

지리적 표시제 등록요건인 지역대표성을 갖춘 생산자단체는, 해당 지리적 표시의 발전을 위해 교육·품질관리·홍보 및 축제 등의 후선사업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신생 법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후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역량이 부족하다. 지역자치단체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까지만 지원하고, 등록이 끝나면 등록법인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기관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원보다는 단속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산림청은 등록법인 스스로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포장재 디자인 개선사업 등 임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법인에 대한 지원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법인은 지역의 공동 재산권을 관리하여, 공익적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역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이 있다. 양양송이처럼 몇몇 지자체에서는 해당 특산품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등록법인이 생산자의 권익과 이익을 높이는 공동화·표준화·네트워크화를 수행함으로써, 지역특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핵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생산자 단체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지리적 표시등록 된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상품을 구입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지리적 표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상품 자체의 품질이 우수함을 이전의 구입경험 등에 의해서 먼저 인식하고 해당 우수상품명을 토대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소비자 대상의 지리적 표시제의 지속적인 홍보에 생산자 단체 대상의 홍보도 겸하여 지리적 표시제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역사성·전통성 고려

앞서 역사성이 규명된 23개 지리적 표시를 <표 17>과 같이, 4종의 지리지의 기록을 기준으로 A, B, C, D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서 『대동지지(大東地志)』까지 4종의 지리지에 모두 기록된 것은 A형, 3종의 지리지에 기록된 것은 B형, 2종의 지리지에 기록된 것은 C형, 1종의 지리지에 기록된 것은 D형이다. 23개 지리적 표시 가운데 A유형은 1개, B유형은 9개, C유형은 7개, D유형은 6개이다. 행정구역이 통합되어 고을별로 기록이 실린 지리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보은대추, 한산모시, 나주배, 경산대추, 상주곶감, 함양곶감, 보성녹차 이다. 역사성이 규명된 지리적 표시의 위치는 <그림 6>과 같다. 지리적 표시제의 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은 지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고유한 역사성과 전통성을 고려한다면, 지리적 표시제의 잠재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표 17. 역사성을 보유한 지리적 표시의 유형

유형	지리적 표시	조선시대 지명(지리지)
A	영암대봉감	영암군(가, 나, 다, 라)
B	홍천жат	홍천현(가, 나, 다)
	보은대추	보은현(가, 다, 라), 회인현(다, 라)
	한산모시	한산군(가, 나, 다), 서천군(가, 나, 다), 비인현(가)
	장흥김	장흥도호부(가, 나, 다)
	장흥표고	장흥도호부(가, 나, 다)
	경산대추	경산현(가, 나, 다), 하양현(가, 나, 다), 자인현(없음)
	함양꽃감	함양군(가, 나, 다), 안음현(가, 나, 다)
	하동녹차	곤남군(나, 다), 하동현(가, 나, 다)
C	약양대봉감	곤남군(가, 나, 다), 하동현(가, 나, 다)
	양양송이	양양도호부(나, 다)
	가평жат	가평현(가, 나)
	나주배	나주목(가, 다), 남평현(다)
	장흥매생이	장흥도호부(나, 다)
	보성녹차	보성군(가, 나)
	기장미역	기장현(나, 다)
D	상주꽃감	상주목(나, 다), 함창현(다, 라)
	강릉두릅	강릉대도호부(다)
	진부당귀	평창군(다)
	울진송이	울진현(나), 평해군(나)
	강화약쑥	강화도호부(가), 교동현(없음)
	충주밤	충주목(다)
영동꽃감	영동현(라), 황간현(라)	

주: 가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토의(土宜)」, 「토공(土貢)」, 「토산(土産)」

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토산(土産)」

다 『여지도서(輿地圖書)』 「물산(物産)」, 「진공(進貢)」

라 『대동지지(大東地志)』 「토산(土産)」

3) 장소마케팅 및 문화역사지리적 상품개발

지리적 표시제 등록대상인 지역특산품은 지역의 자연 환경적 요소와 인적·문화적 요인에 의해, 거의 대부분 오랜 세월동안 지역민들의 삶 속에 배어들어 왔으므로,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향토자원이다. 그렇다 보니 지역의 자연 환경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이 연계된 관광수입이, 지역특산품의 매출액보다 큰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보성녹차의 경우, 녹차판매액은 485억 원이지만 녹차관광이나 관련 산업의 연계를 통해 연간 5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⁵³⁾. 웰빙 트렌드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과거 주목받지 못했던 산나물·꽃감·고추장·콩 등의 향토음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주5일제 근무와 맞물려 관광과 레저에 대한 높은 수요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지리적 표시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역사성·전통성 요소를 포함한 지리적 표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지리적 표시 상품이 아닌, 지역의 고유성을 반영하는 장소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그 상품의 개발에서도 문화적 성격, 역사적 성격, 지리적 성격을 포함하여 고려한다면 지리적 표시제가 긍정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53) 서정욱, 2006, “지리적 표시제 도입이 지역 문화산업 진흥에 미치는 영향 -보성녹차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 12(2). pp. 235~240.

V. 결 론

본 논문은 지리적 표시제의 대안으로서, 역사성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역사 지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일차로 제도의 실시현황의 지역별 고찰을 위해 시·군별로 지역별 분석과 지도화를 시도하였으며, 이어 품목별 분석을 하였다. 지리적 표시제가 행정적, 경제적 성격으로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성을 규명하는 새로운 시각으로서 역사지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조선시대의 지리지를 통해 지역의 특산물을 파악해 보고자, 조선시대의 주요한 지리지인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15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6세기), 『여지도서(輿地圖書)』(18세기), 『대동지지(大東地志)』(19세기)의 「토산(土產)」과 「물산(物產)」항목을 살펴서 현재의 지리적 표시 품목과 얼마나 일치, 불일치하는가 여부를 분석하였다. 행정구역의 통합도 고려하여 현재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과 역사지역이 달라진 경우 고을별로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역사성이 있다고 보이는 품목은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 있는지, 통합된 고을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 품목인지 여부를 살펴 지리적 표시제가 가지는 역사성을 도출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강릉두릅, 양양송이, 진부당귀, 홍천갯, 울진송이, 가평갯, 강화약쑥, 충주밤, 영동곶감, 보은대추, 한산모시, 나주배, 영암대봉감, 장흥김, 장흥매생이, 장흥표고버섯, 보성녹차, 경산대추, 기장미역, 상주곶감, 함양곶감, 하동녹차, 악양대봉감의 23개 품목은 역사기록과 현재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품목이 일치해 역사적·지리적 전통성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의 지리지에 기록된 「토산(土產)」과 현재의 지리적 표시제 품목을 비교한 결과, 많은 불일치를 보였다. 일치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역사기록에 있으나 지리적 표시에 등록되지 않은 품목과, 역사기록에는 없지만 현재는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는 품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행정

구역의 통합도 고려하여, 현재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과 역사지역이 달라진 경우 고을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역사성이 있다고 보이는 품목은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 있는지, 통합된 고을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 품목인지 여부를 살펴 결론적으로 지리적 표시제가 가지는 역사성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지리적 표시 품목의 역사성을 홍보해온 지리적 표시들이 객관화될 수 있으며, 지리적 표시가 가진 역사성의 연속정도를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을 살펴 연속성의 축을 확장할 수도 있다. 그동안 개개 품목이 주장해온 역사성 여부를 동일한 기준으로 남한을 살펴보아, 그 과정에서 행정구역의 변화를 고려하였고, 시간적 연속성이 있는 4개의 지리지를 방법론의 렌즈로 사용하여 역사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객관화’라는 의미가 있다. 지리지의 「토산」과 지리적 표시제의 품목은 대부분 일치하지 않았으나, 역으로 일치하는 지역과 품목의 역사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조선시대로 한정하고, 읍지연구를 하지 못한 것이 본 논문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특산품으로서 역사성을 가진 기록은 조선시대 이전과 이후에도 있을 것이나, 시간범위를 확대한 내용은 다루지 못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 연구방법으로 전국지리지 4종의 「토산」조를 사용했지만 그 외에도 지역별로 편찬한 지역읍지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실시현황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점과 역사문헌을 통한 연구라는 점,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최초의 연구라는 점, 이후에 관련 연구필요성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역사지리적 시각의 연구가 축적된다면 기존 지리적 표시의 등록체계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한국형 지리적 표시제의 발전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기꾸지 도시오, 윤정숙 역, 1995, 역사지리학방법론, 이회.
변주승 외, 2009, (국역)여지도서, 전주대학교, 디자인흐름.
이준선 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1, 한국역사지리, 푸른길.

<연구보고서>

- 김병일, 2007, 독일에서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 창작과 권리 제49호(겨울).
김병일, 2003, 지리적 표시 보호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13호.
김병일, 2001(a),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 창작과 권리 제22호(봄).
김병일, 2001(b), 지리적 표시의 효율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 연구용역보고서 <http://www.kipo.go.kr/kipo/user.tdf>.
김원오 외, 2011, 국내 지리적 표시제도의 통합화 방안 연구, 사단법인 대한
상표협회

<학술지논문>

- 서정욱, 2006, 지리적 표시제 도입이 지역 문화산업 진흥에 미치는 영향 -보성
녹차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 12(2).
서종태, 2006, 『여지도서』의 「물산」 조항 연구,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제 25호.
양보경, 2001, 고산자 김정호의 지리지 편찬과 그 의의,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
업 연구 용역 논문집.
이기봉, 2003, 조선시대 전국지리지의 생산적 항목에 대한 검토, 문화역사지리
15(3).

전현진, 이주현, 2010, 지리적 표시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19(1).

최경환, 2011, 지리적 표시제의 운영실태, 지리적 표시제도의 통합화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대한상표협회.

<학위논문>

구양준, 2009,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무역학 박사학위논문.

권혁례, 2005, 북분자주의 관광상품적 가치에 관한 연구 : 고창 지역을 중심으
로, 배재대학교 관광경영대학원 호텔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금령, 2009, 중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은철, 2001, 인삼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심규영, 2004,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복원과 그 지도화 -《조선십삼도도
》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용석, 2003, 상표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 TRIPs 협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법 전공 석사학위논문.

전현진, 2009,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를 통한 농산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소득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경영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조정은, 2008,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생산자,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농산물 및 가공품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식품가공학 외식산업학전공 석사학위논문.

허순희, 2005, 지적재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인터넷사이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www.qia.go.kr

산림청 www.forest.go.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www.koreanhistory.or.kr

ABSTRACT

Historical Geographical Approach of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in Korea

Yu, Ki Jin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 Shin Woman's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Bo Kyung)

Geographical indication aims at raising the quality of local produces and securing the local competitiveness of local produces by registering the geographical indication of good agricultural, livestock, forest, and marine products. Furthermore, it has a positive function of protecting producers, raising their competitiveness, and guaranteeing right-to-know of consumers by giving them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s. South Korea adopted the indication institution from the year of 2000 in order to response aggressively to the global trend of adopting geographical indication. After the green tea of Boseong was registered as No. 1 of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geographical indication in 2002, more products got registered, and now the number of the registered products is 133 till May 2012. The pre-existing studies on this subject mainly focused on institutions, procedures, international attitudes in the fields of laws, patents, and trades. However, geographical aspects of the subject have not been studied much.

This study aimed at approaching the subject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Geograph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tried to carry out regional analysis by cities and counties and made a map based on the analysis in order to take regional consideration of the state of how the institution is implemented. Then, I took an analysis of the subject by items. As geographical indication tends to be understood as administrative and economic features, I selected an historical and geographical approach as the perspective of revealing regional characteristics. By studying the contents of local produces and products in the Jiriji of the Joseon age like 『Sejongsilok(世宗實錄)』 『Jiriji(地理誌)』 (15c), 『Sinjeungdonggukyeojiseungram(新增東國輿地勝覽)』 (16c), 『Yeojidoseo(輿誌圖書)』 (18c), 『Daedongjiji(大東地志)』 (19c), we took an analysis of which produces and products in the Jiriji coincide with those produced now. For the produces and products are not matched, I looked into the items that do not exist but are shown a lot in the jiriji, and the items exist but are not shown in the jiriji at all. Taking consideration of uniting administrative districts, I got patterns by analyzing by villages when historically recorded regions are not matched with current geographical regions. Furthermore, I studied the continuity of the items that have existed for a long time, and whether a item is founded from all of the united villages in order to extract the historicity of geographical indication.

As a result, 23 Geographical Indications including Gangreung's Hangwa(fatsia), Yangyang's Songi(mushroom), Jinbu's Dangkuei, Hongcheon's Jat(pine nut), Uljin's Songi(mushroom), Gapyeong's Jat(pine nut), Ganghwa's Yakssuk(moxa), Chungju's Bam(chestnut), Youngdong's Gotgam(dried persimmon), Boeun's Daechu(jujube), Hansan's Sambe(ramie

cloth), Naju's Bae(pear), Youngam's Gam(persimmon), Jangheung's Gim(laver), Jangheung's Maesangi, Jangheung's Kijogae(shellfish), Boseong's Nokcha(green tea), Kyongsan's Daechu(jujube), Kijang's Miyeok(seaweed), Sangju's Gotgam(dried persimmon), Hamyang's Gotgam(dried persimmon), Hadong's Nokcha(green tea), and Acyang's Daebonggam(daebong persimmon) are identified as having the historical and geographical traditionality for the correspondence between historical records and current indication.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geographical indication because its legal basis can cause a conflict with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nd Trademark Act. In addition, it would not be unified because of seve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Forest Service, or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The study results will contribute to objectify items that have been locally promoting the history of geographical indication, with identifying their own traditional characteristics. Also, it is possible to extend the axis of the continuity partially by examining the records before Josun Dynasty. The study has a limitation in setting a narrow range of time as Joseon Dynasty, as well as not specifying the study objects by the level of Eupji(邑誌). However, this study would have significance because it is the first study using the method of history documentary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Geography.

부 록

부록 1. 농축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현황(2012.04 기준)

등록번호	등록명칭	등록일자	등록자	대상지역	생산계획량 (ton은 단위생략)
제1호	보성녹차	2002.01.25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	전남 보성군	9.6
제2호	하동녹차	2003.05.02	하동차영농조합법인	경남 하동군	6.5
제3호	고창복분자주	2004.01.15	고창으뜸복분자주 영농조합법인	전북 고창군	2.9
제5호	영양고춧가루	2005.03.05	영양고추 영농조합법인	경북 영양군	395
제6호	의성마늘	2005.07.18	의성마늘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	경북 의성군	10,340
제7호	괴산고추	2005.08.25	괴산고추 영농조합법인	충북 괴산군	1,482
제8호	순창전통고추장	2005.10.14	영농조합법인 순창전통고추장연합회	전북 순창군	40.8
제9호	괴산고춧가루	2005.11.07	괴산농업협동조합	충북 괴산군	280
제10호	성주참외	2005.12.01	성주참외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	경북 성주군	65,969
제11호	해남겨울배추	2005.12.26	해남겨울배추생산자협의회 영농조합법인	전남 해남군	68,393
제12호	이천쌀	2005.12.26	이천쌀사랑 영농조합법인	경기 이천시	9.6
제13호	철원쌀	2005.12.26	철원오대쌀생산자 영농조합법인	강원 철원군	40,620
제14호	고흥유자	2006.05.08	고흥유자연협회 영농조합법인	전남 고흥군	5,104
제15호	홍천찰옥수수	2006.06.05	홍천찰옥수수 영농조합법인	강원 홍천군	2,235
제16호	강화약쑥	2006.08.07	강화군 산림조합	인천 강화군	35,029
제17호	횡성한우고기	2006.09.11	횡성축산업협동조합	강원 횡성군	1,200
제18호	제주돼지고기	2006.09.19	사단법인 제주수출육가공협회	제주특별자치도	235,000두
제19호	고려홍삼	2006.12.07	사단법인 고려인삼연합회	국내	449
제20호	고려백삼	2006.12.07	사단법인 고려인삼연합회	국내	77
제21호	고려태극삼	2006.12.07	사단법인 고려인삼연합회	국내	449
제22호	안동포	2006.12.07	안동포생산자 영농조합법인	경북 안동시	902필

제23호	충주사과	2006.12.11	충주사과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	충북 청주시
제24호	밀양얼음골사과	2006.12.29	얼음골 영농조합법인	경남 밀양시 산내면
제25호	한산모시	2006.12.29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	충남 서천군
제26호	진도홍주	2007.01.23	사단법인 진도홍주연합회	전남 진도군
제27호	정선허기	2007.01.27	정선허기생산농업인 영농조합법인	강원 정선군
제28호	남해마늘	2007.05.01	남해마늘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	경남 남해군
제29호	단양마늘	2007.05.04	단양마늘동호회 영농조합법인	충북 단양군
제30호	창녕양파	2007.06.05	창녕명품양파 영농조합법인	경남 창녕군
제31호	무안양파	2007.07.02	무안양파영농조합법인	전남 무안군
제32호	여주쌀	2007.07.11	사단법인 여주쌀생산자협의회	경기 여주군
제33호	무안백련차	2007.07.11	연마을 영농조합법인	전남 무안군
제34호	청송사과	2007.08.27	청송사과 영농조합법인	경북 청송군
제35호	고창복분자	2007.08.27	고창복분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	전북 고창군
제36호	광양매실	2007.08.27	광양매실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전남 광양시
제37호	정선찰옥수수	2007.08.27	정선찰옥수수 영농조합법인	강원 정선군
제38호	진부당귀	2007.10.01	진부당귀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전역, 도암면 서부지역, 용평면 전역, 봉평면 동부지역, 대화면 북부지역의 해발 400m 이상 지역
제39호	고려수삼	2007.12.20	사단법인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	국내
제40호	청양고추	2007.12.20	청양고추 영농조합법인	충남 청양군
제41호	청양고춧가루	2007.12.20	청양농업협동조합법인	충남 청양군
제42호	해남고구마	2008.01.30	사단법인 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	전남 해남군
제43호	영암무화과	2008.01.30	영암무화과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전남 영암군
제45호	보성삼베	2008.03.05	보성삼베 영농조합법인	전남 보성군
제46호	함안수박	2008.04.07	함안수박 영농조합법인	경남 함안군
제47호	고려인삼제품	2008.06.16	사단법인 고려인삼연합회	국내

제48호	고려홍삼제품	2008.06.16	사단법인 고려인삼연합회	국내	1,135
제49호	군산찰쌀보리쌀	2008.07.30	사단법인 군산흰찰쌀보리생산자협회	전북 군산시	2,443
제50호	제주녹차	2008.10.16	사단법인 제주녹차발전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	58
제51호	홍천한우	2008.10.16	홍천축산업협동조합	강원 홍천군	608
제52호	영월고추	2008.12.19	영월고추 영농조합법인	강원 영월군	1,494
제53호	영천포도	2009.01.22	사단법인 영천포도생산자협회	경북 영천시	12,668
제54호	영주사과	2009.01.22	사단법인 영주사과협회	경북 영주시 해발 200m 이상 지역	30,392
제55호	서생간절곶배	2009.03.27	간절곶배 영농조합법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7,000
제56호	무주사과	2009.04.03	무주과수 영농조합법인	전북 무주군 해발 200m 이상 지역	3,392
제57호	함평한우	2009.09.14	함평축산업협동조합	전남 함평군	532
제58호	삼척마늘	2009.09.14	삼척마늘생산자 영농조합법인	강원 삼척시	591
제59호	김천자두	2009.12.17	사단법인 김천자두협회	경북 김천시	7,500
제60호	영동포도	2009.12.17	사단법인 영동포도연합회	충북 영동군	33,823
제61호	진도대파	2010.03.02	사단법인 진도대파생산자단체협의회	전남 진도군	30,197
제62호	김천포도	2010.03.02	김천포도 영농조합법인	경북 김천시	17,850
제63호	원주치악산복숭아	2010.03.25	원주치악산복숭아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강원 원주시 (문막읍, 지정면, 부론면 제외)	3,000
제64호	영월고춧가루	2010.03.25	영월고추 영농조합법인	강원 영월군	175
제65호	영광찰쌀보리쌀	2010.03.25	사단법인 영광군찰쌀보리연합회	전남 영광군	2,507
제66호	예산사과	2010.03.25	사단법인 예산황토사과연합회	충남 예산군	22,747
제67호	여수돌산갓	2010.07.12	여수시돌산갓 영농조합법인	전남 여주시	17,843
제68호	여수돌산갓김치	2010.07.12	사단법인 여수돌산갓김치생산자연협회	전남 여주시	2,939
제69호	청도한재미나리	2010.08.24	사단법인 청도한재미나리생산자연협회	경북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음지리, 평양리, 상리	932
제70호	담양딸기	2010.11.08	담양딸기 영농조합법인	전남 담양군	7,634
제71호	보성웅치올벼쌀	2010.11.08	보성농협웅치지점	전남 보성군 웅치면	307

제72호	사천꽃마늘	2010.11.08	사천꽃마늘 영농조합법인	경남 사천시
제73호	고령수박	2011.03.02	동고령농업협동조합	경북 고령군 우곡면, 개진면, 성산면
제74호	의령망개떡	2011.03.02	사단법인 의령망개떡협의회	경남 의령군
제75호	강릉한과	2011.05.25	강릉제일한과 영농조합법인	강원 강릉시
제76호	금산갯잎	2011.05.04	금산갯잎 영농조합법인	충남 금산군
제77호	괴산찰옥수수	2011.05.04	괴산대학찰옥수수 영농조합법인	충북 괴산군
제78호	인제콩	2011.07.11	인제콩 영농조합법인	강원 인제군
제79호	김포쌀	2011.07.11	사단법인 김포금쌀 사랑회	경기 김포시
제80호	영광한우	2011.12.26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전남 영광군
제81호	나주배	2012.03.05	나주배지리표시 영농조합법인	전남 나주시
제82호	창녕마늘	2012.03.05	창녕마늘 영농조합법인	경남 창녕군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

부록 2.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현황(2012.04 기준)

등록번호	등록명칭	등록일자	등록자	대상지역
제1호	양양송이	2006.03.27	양양송이 영농조합법인	강원 양양군
제2호	장흥표고버섯	2006.05.16	정남진장흥표고버섯연합회	전남 장흥군
제3호	산청곶감	2006.06.09	산청군노동협동조합	경남 산청군
제4호	정안밤	2006.09.15	정안밤생산자 영농조합법인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제5호	울릉도삼나물	2006.12.15	울릉농업협동조합	경북 울릉군
제6호	울릉도미역취	2006.12.15	울릉농업협동조합	경북 울릉군
제7호	울릉도참고비	2006.12.15	울릉농업협동조합	경북 울릉군
제8호	울릉도부지갱이	2006.12.15	울릉농업협동조합	경북 울릉군
제9호	경산대추	2007.01.03	경산대추 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	경북 경산시
제10호	봉화송이	2007.01.03	봉화군 산림조합	경북 봉화군
제11호	청양구기자	2007.02.01	청양구기자생산자 영농조합법인	충남 청양군
제12호	상주곶감	2007.06.12	상주곶감발전연합회 영농조합법인	경북 상주시
제13호	창선고사리	2007.07.16	창선농업협동조합	경남 남해군 창선면
제14호	영덕송이	2008.02.12	영덕군 산림조합	경북 영덕군
제15호	구례산수유	2008.03.12	구례산수유 영농조합법인	전남 구례군
제16호	광양백운산 고로쇠수액	2008.08.13	광양백운산 고로쇠약수 영농조합법인	전남 광양시 백운산 일대
제17호	영암대봉감	2008.11.25	영암대봉감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전남 영암군
제18호	천안호두	2008.12.23	천안명물호두생산자협회 영농조합법인	충남 천안시
제19호	문경오미자	2009.01.28	사단법인 문경오미자 생산자협회	경북 문경시
제20호	무주머루	2009.01.28	무주머루 영농조합법인	전북 무주군
제21호	울진송이	2009.04.01	울진군 산림조합	경북 울진군
제22호	횡성더덕	2009.05.12	횡성군 더덕연합 영농조합법인	강원 횡성군

제23호	약양대봉감	2009.05.12	약양대봉감 영농조합법인	경남 하동군 약양면
제24호	영동곶감	2009.06.23	영농조합법인 영동곶감연합회	충북 영동군
제25호	가평잣	2009.06.23	사단법인 가평잣협회	경기 가평군
제26호	홍천잣	2009.11.17	홍천군 산림조합	강원 홍천군
제27호	보은대추	2010.03.10	사단법인 보은군황도대추연합회	충북 보은군
제28호	청도반시	2010.03.10	사단법인 청도반시생산자협회	경북 청도군
제29호	정선곶드레(고려영정귀)	2010.04.05	정선곶드레 영농조합법인	강원 정선군
제30호	거제맹종죽순	2010.09.08	거제맹종죽순영농조합법인	경남 거제시 하청면
제31호	태백곰취	2010.11.22	태백곰취영농조합법인	강원 태백시
제32호	인제곰취	2010.11.22	인제山곰취생산자연협회 영농조합법인	강원 인제군
제33호	덕유산고로쇠수액	2011.02.07	덕유산고로쇠 영농조합법인	덕유산 지역
제34호	진도구기자	2011.03.02	사단법인 진도구기자생산자단체협의회	전남 진도군
제35호	횡성참숯	2011.03.02	횡성태양참숯 영농조합법인	강원 횡성군
제36호	담양죽순	2011.03.02	사단법인 담양죽순생산자단체협의회	전남 담양군
제37호	무주머루와인	2011.04.25	사단법인 무주머루와인 생산자단체협의회	전북 무주군
제38호	충주밤	2011.04.25	사단법인 충주밤생산자연협회	충북 충주시
제39호	함양곶감	2011.08.08	함양곶감 영농조합법인	경남 함양군
제40호	울릉도 우산고로쇠 수액	2012.03.05	울릉군 산림조합	경북 울릉군
제41호	강릉개두릅(읍나무새순)	2012.03.05	강릉개두릅생산자협회 영농조합법인	강원 강릉시

출처 : 산림청 www.forest.go.kr 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

부록 3.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현황(2012.04 기준)

등록번호	등록명칭	등록일자	등록자	대상지역
제1호	보성벌교꼬막	2009.02.25	보성벌교꼬막영어조합법인	전남 보성군 벌교읍
제2호	완도전복	2009.02.25	사단법인 완도전복생산자협회	전남 완도군
제3호	완도미역	2009.02.25	사단법인 완도군미역협회	전남 완도군
제4호	완도다시마	2009.02.25	사단법인 완도군다시마생산자협회	전남 완도군
제5호	기장미역	2009.02.25	기장해조류연합회 영어조합법인	경남 기장군
제6호	기장다시마	2009.02.25	기장해조류연합회 영어조합법인	경남 기장군
제7호	장흥키조개	2009.02.25	정남진장흥키조개영어조합법인	전남 장흥군
제8호	완도김	2010.08.20	완도군김영어조합법인	전남 완도군
제9호	완도넙치	2010.08.20	완도군넙치영어조합법인	전남 완도군
제10호	장흥김	2011.01.18	사단법인 장흥무산김생산자협회	전남 장흥군
제11호	장흥매생이	2011.05.13	사단법인 장흥매생이생산자협의회	전남 장흥군
제12호	여수굴	2012.02.28		전남 여수시

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www.qia.go.kr 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